

碩士學位論文

靑少年犯罪의 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金 燦 昊

青少年犯罪의 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昌 君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7月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 璨 昊

金璨昊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年 7月

審 查 委 員 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問題의 提起	1
第 2 節 研究의 目的	3
第 3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4
第 2 章 青少年犯罪의 意義와 實態	5
第 1 節 青少年 犯罪의 意義	5
1. 青少年의 概念	5
2. 青少年犯罪의 概念	7
第 2 節 青少年 犯罪의 실태	8
1. 青少年 犯罪의 추세	8
2. 青少年犯罪의 類型別 實態	9
3. 學生犯罪 現況	17
4. 青少年 麻藥類事犯	19
第3章 青少年犯罪의 理論的 背景과 具體的인 原因分析	23
第 1 節 青少年犯罪의 理論的 背景	23
1. 心理的 原因	23
2. 社會的 原因	27
3. 小 結 論	38
第2節 青少年犯罪의 原因分析	39
1. 家庭的 要因	39
2. 教育制度의 要因	40
3. 社會的 要因	41
4. 矯正機關에의 要因	42

第 4 章 青少年犯罪에 대한 對策	44
第 1 節 青少年犯罪에 대한 各國의 對策	44
1. 美 國	44
2. 유럽地域	45
3. 日 本	48
第 2 節 青少年犯罪에 대한 社會的 對策	51
1. 家庭環境	51
2. 教育環境	54
3. 地域社會	55
4. 政 府	60
第 3 節 青少年犯罪에 대한 刑事政策的 對策	64
1. 再犯防止 및 矯正處遇	64
2. 少年院 處遇프로그램에 대한 改善方案	70
3. 野外 克己訓練의 活用	76
4. 少年院과 大學의 連繫	78
第 4 節 警察의 役割增大 方案	79
1. 關聯法規의 緩和	79
2. 學校·警察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79
3. 警察의 構造改革	80
第5章 結 論	81
參 考 文 獻	84
ABSTRACT	92

표 차례

<표1> 靑少年의 區分	6
<표2> 犯罪對比 靑少年犯罪 構成 現況	8
<표3> 靑少年犯罪 類型別 現況	9
<표4> 靑少年犯罪 年齡別 現況	0
<표5> 成人犯罪 年齡別 現況(20세~24세)	0
<표6> 靑少年犯罪의 男女別 現況	1
<표7> 靑少年犯罪의 動機別 現況	2
<표8> 靑少年犯罪의 教育程度別 現況	3
<표9> 靑少年犯罪 家族關係別 現況	4
<표10> 靑少年범죄의 前科別 現況	5
<표11> 少年犯罪者 共犯關係 現況	6
<표12> 學生犯罪의 年度別 現況	7
<표13> 學生犯罪의 類型別 現況	8
<표14> 學生犯罪의 動機別 現況	9
<표15> 麻藥類事犯 團束實績	2
<표16> 靑少年 麻藥類事犯 年齡別 現況	2
<표17> 年齡別 幻覺物質 吸入事犯 團束現況	2
<표18> 主要 先進國의 靑少年問題와 對策 比較	6
<표19> 最近 5년간 少年院 再犯現況	6

第1章 序 論

第1節 問題의 提起

청소년을 한 나라의 꽃이요 앞날의 주인공이라고 볼 때 많은 청소년들이 犯罪少年으로 타락하거나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身體的, 精神的으로 불안정하게 자란다면 이는 참으로 국가장래를 위해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가 한 국가의 또는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비행은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점점 증가 일로에 있으며, 非行靑少年의 연령이 낮아지고 난폭해 지고 있는 것은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인류역사와 그 근원을 같이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는 현대사회가 지닌 중대한 과제임을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현대화는 청소년의 삶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社會構造的 環境에 있어서도 많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산업화는 사회적으로 가용한 자원 및 개개인의 부를 확대시켜 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産業化, 現代化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반드시 이로운 기회구조와 조건들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게 되었고, 급기야 拜金主義와 퇴폐향락주의는 사회도처에 유흥업소, 숙박업소,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들의 성장을 자극하였다.

우리사회의 산업화가 가져온 풍요로움은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체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價値觀을 중요한 가치체계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1990년대 초반의 ‘오렌지 세대’, ‘신세대’, ‘X세대’ 라는 용어는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 이러한 문화와 오락산업의 확산은 청소년층에게 새로움을 향한 역동적이면서도 저항적인 문화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학입시 위주의 공식적인 학교문화, 공부에 대한 부모와 교사,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압력은 청소년층의 일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靑少年犯罪는 우리사회의 산업화, 문명화, 현대화의 큰 줄기를 따라 같이 변화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범죄에 대한 제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되고 발표되어 왔다. 여기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도별로 청소년범죄의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범죄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사회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아울러 청소년 범죄문제에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第2節 研究의 目的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社會變化로 인한 세대간의 단절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및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로인한 각종 病理現象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가치관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사회적응의 곤란 등을 야기시켜 범죄와 비행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규범의식이 인터넷의 보급과 향락문화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더욱 크다. 더욱이 최근 청소년 비행의 특징은 학교 주변 폭력, 동기없는 범죄, 이지메와 왕따현상 등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그 질과 양의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차이가 나지만 모든 현대국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금의 다양한 청소년범죄를 통제하기 위하여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서는 청소년범죄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가정적 요인, 교육제도의 요인, 사회적 요인, 교정기관에서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범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社會環境的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등 공식적인 통제기관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등 비공식적 통제기관들이 청소년 비행통제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요 우리의 희망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그 예방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第3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본 논문에서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 방법으로 범죄백서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理論的 側面과 心理的 要因, 그리고 社會的 側面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의 범죄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사회와 환경의 상호 규합적인 연관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현재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하여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統計資料와 국내외에서 발표된 청소년문제에 관한 논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최근에 발간된 범죄분석 및 청소년 백서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범죄의 의의와 실태를 살펴 보았는데 청소년 및 청소년범죄의 개념을 파악하고 청소년범죄의 실태를 유형별·특징별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범죄의 이론적 배경을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론 제시와 청소년범죄 원인을 가정적 요인, 교육제도의 요인, 사회적 요인, 교정기관에서의 요인으로 분류한 후 집중분석 하였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청소년범죄 대책을 살펴본 후 각국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시책들을 참고로 하여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크게 사회에서의 대책, 형사정책적 대책, 경찰의 역할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第2章 青少年犯罪의 意義와 實態

第1節 青少年 犯罪의 意義

1. 青少年의 概念

청소년이란 身體的·心理的·精神的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¹⁾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각기 법제정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青少年’ 이라고 할 때에는 흔히 중·고등학교의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이를 말하고 있으며, 心理學的 概念으로는 ‘青年’ 이란 14, 5세부터 22, 3세까지를 말하며, ‘少年’ 이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12, 3세까지의 연령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 청소년이란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는 이유는 사회 각 분야마다 청소년이란 개념을 매우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란 성인이 되기 위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 즉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13, 4-23, 4세의 젊은이로 보아야 하나 청소년의 善導育成 保護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이하의 연령까지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볼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일명 틴에이저(teen ager)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발달 면을 볼 때 질적·양적으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에는 체격이 성인으로 변화하는 시기로서 신장, 체중을 시작으로 체격의 현저한 양적 성장이 뚜렷하고 이에 동반하여 체력이나 운동능력이 발달된다. 또 질적인 변화로서는 생식기의 성숙에 따라 제2차 성장이 발현하고 급격한 성적 발달을 보여준다. 청소년기의 신체에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함께 복잡하고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청소년기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김제황·공석영·김충기, 「청년발달심리학」, 세광공사, 1993, p. 13.

또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지적 발달면에 있어서 단순히 기억력이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볼 수 없는 抽象的 思考能力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흥미나 관심이 대상이 확대되어 장래에의 전망이나 인생의 목표 등에 관한 생각과 함께 이상과 현실사이의 격차, 모순에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게 된다. 이와같이 청소년기의 지적 능력 성숙은 청소년들의 정신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발달 과정은 청소년비행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²⁾

<표 1> 靑少年의 區分

명 칭	취급구분	연 령	법 령	비 고
영 아 유 아	영아유기 유아대동	0세 18개월 미만	형법 272조 행형법 8조	
아 동	의무교육 학령 혹사 금지 생활보호 요 보 호	6~12세 16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교육기본법 8조 형법 274조 생활보호법 3조 아동복지법 2조	
근로소년	사용금지 근로시간 제한 연소선원 사용제한	15세 미만 15 - 18세 16세미만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62조 근로기준법 67조 선원법 81조 근로기준법 51조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소년수행자	12 - 14세 14 - 19세 12 - 19세 20세 미만	소년법 4조 소년법 4조 소년법 4조 행형법 32조	
미성년자	간음추행 형사미성년 선서무능력 관람금지 행위무능력	13세 미만 14세 미만 16세 미만 18세 미만 20세 미만	형법 305조 형법 9조 형사소송법 159조 공연법 22조 민법 5조	

2) 이윤우, “한국청소년의 비행원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p. 8.

2. 靑少年犯罪의 概念

靑少年범죄는 보통 犯罪少年(crime juvenile)라고 지칭되고 있으며 이는 곧 成年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靑少年의 범죄를 말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靑少年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가의 법규정상 靑少年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한편 이보다 약간 넓은 개념으로서 ‘少年非行’(juvenile delinquenc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少年비행의 개념에는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觸法少年, 虞犯少年을 말하며³⁾, 少年경찰의 보도대상에는 불량행위 소년과 要保護少年을 포함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矯正의 실무상으로는 少年비행자 중 보호처분을 받고 少年원에 수용중인 자를 비행소년이라 하고 刑罰을 받고 少年교도소에 복역중인 자를 범죄소년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靑少年범죄라 함은 1988년 12월 31일 개정된 少年법 제4조 제1항 1호, 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⁴⁾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虞犯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p. 531.

4) 少年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촉법행위를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5) 少年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우범행위를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 정당한 이유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제 등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장” 으로 규정하고 있다.

第2節 青少年 犯罪의 실태

오늘날 사회가 날로 변천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정치·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다양성을 가중시켜 나감에 따라 청소년의 범죄현상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凶惡化·集團化·暴力化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이의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단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青少年 犯罪의 추세

少年犯罪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1년도 소년범죄는 1997년도에 비하여 15.9%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범죄는 14.6%가 증가하였다.

<표2>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범죄	1,804,405 (100)	2,018,296 (111.8)	2,117,759 (117.4)	2,341,431 (129.8)	2,400,485 (133.0)	2,329,134 (110.0)	2,426,050 (114.6)
소년 범죄	124,244 (100)	146,986 (118.3)	164,182 (132.1)	161,277 (129.8)	150,821 (121.4)	151,176 (92.1)	138,030 (84.1)
구성비율(%)	6.9	7.3	7.8	6.9	6.3	6.5	5.7

주 : ()은 기준년도의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2. 靑少年犯罪의 類型別 實態

1) 犯罪 類型別 動向

2001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7.0%, 재산범이 24.5%, 교통사범이 30.3%, 殺人·強盜·強姦 등 강력범이 2.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5년에 비하여 강력범은 20.1%가 감소하였으나, 폭력범은 7.5%, 재산범은 4.5%, 교통사범은 35.9%가 각각 증가하였다.

<표3>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124,244	146,986	164,182	161,277	150,821	151,176	138,030
강력범	소 계	4,349	4,566	5,653	6,134	5,053	4,421	3,479
	살 인	65	69	79	65	71	45	49
	강 도	2,684	2,840	3,651	4,273	3,102	2,691	1,885
	강 간 방 화	1,526 74	1,599 58	1,840 83	1,703 93	1,709 171	1,515 170	1,371 174
폭력범	소 계	47,523	53,165	62,218	57,080	56,757	56,711	51,095
	폭 행·상 해	46,696	52,359	61,383	56,461	56,186	56,125	50,598
	공 갈 기 타	802 25	769 37	790 45	557 62	517 54	488 98	420 77
재산범	소 계	32,338	34,044	39,605	45,561	56,186	39,834	33,822
	절 도	28,616	29,936	35,177	39,894	36,612	34,236	25,926
	횡 령배 임	1,056	955	993	887	788	1,048	981
	장 물 사 기	739 1,927	757 2,396	741 2,694	819 3,961	731 3,931	555 3,995	343 6,572
교 통 사 범		30,808	39,378	45,622	41,665	40,874	42,537	41,869
기 타		9,226	15,833	11,084	10,837	11,525	7,673	7,765

- 주 : 1) 폭행·상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범이 포함되어 있음
 2) 폭력범 중 기타는 체포와 감금, 협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포함
 3) 강간에는 '94. 4.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이 포함되었음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2) 年齢別 現況

少年犯罪者の 연령별 상황을 보면 15세 이하의 범죠평년은 1995년에 28.1%이던 것이 2001년에는 21.2%로 6%가 낮아진 반면, 18세~19세의 범죠평년은 1995년에 35.1%에서 2001년에 45.5%로 10.4%가 높아졌다.

<표4> 청소년범죠평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소년범죠평자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인 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95	124,244	2,551	2.1	32,352	26.0	45,707	36.8	43,634	35.1	
'96	146,986	4,660	3.2	38,084	25.9	53,130	36.1	51,112	34.8	
'97	164,182	4,093	2.5	42,786	26.1	61,622	37.5	55,681	33.9	
'98	161,277	1,886	1.2	35,964	23.3	59,833	37.1	63,594	39.4	
'99	150,821	1,674	1.1	30,088	19.9	53,857	35.7	64,212	43.2	
'00	151,176	1,649	1.1	33,047	21.8	53,324	35.3	63,156	41.8	
'01	138,030	1,656	1.2	27,606	20.0	45,964	33.3	62,084	45.5	

자료 : 대검찰청, 「범죠평분석」, 1996-2002

<표5> 성인범죠평 연령별 현황(20세~24세)

(단위 : 명, %)

연 도	연령별					
	총 계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95	156,036	16,963	19,158	30,466	40,844	48,605
'96	155,555	17,454	19,672	31,613	41,234	45,582
'97	150,412	17,720	17,581	29,283	40,715	45,113
'98	154,693	19,738	19,636	29,381	39,687	46,251
'99	153,981	22,182	19,959	30,210	38,140	43,490
'00	155,313	24,692	21,598	29,471	37,536	42,016
'01	173,567	28,023	26,629	32,745	41,640	44,530

자료 : 대검찰청, 「범죠평분석」, 1996-2002

3) 男女別 現況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2001년에 남자 少年犯은 116,235명으로 84.2%, 여자 소년범은 19,546명으로 15.8%인 바, 1995년에 비해 남자 소년범의 비율은 8.6% 낮아진 반면, 여자 소년범의 比率은 8.6% 높아졌다.

<표6> 청소년범죄의 남녀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남 자		여 자	
		인 원	점 유 율	인 원	점 유 율
'95	124,244	115,271	92.8	8,973	7.2
'96	146,986	134,104	91.2	12,882	8.8
'97	164,182	150,396	91.6	13,786	8.4
'98	161,277	144,907	89.9	16,370	10.1
'99	150,821	131,275	87.0	19,546	13.0
'00	151,176	131,444	86.9	19,732	13.1
'01	138,030	116,235	84.2	21,795	15.8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4) 動機別 現況

2001년의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偶發的 犯行이 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주의가 15.2%, 생활비·유혹비 등 利慾이 15.0%, 취중(호기심)이 5.5%의 순이다.

<표7> 청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계		124,244 (100)	146,986 (100)	164,182 (100)	161,277 (100)	150,821 (100)	151,176 (100)	138,030 (100)
이 욕	소 계	22,122 (17.8)	26,030 (17.0)	22,985 (14.0)	26,949 (16.7)	24,294 (16.1)	23,595 (15.6)	20,703 (15.0)
	생 활 비	1,691 (1.4)	2,474 (1.7)	1,947 (1.2)	2,612 (1.6)	2,548 (1.7)	2,045 (1.4)	2,070 (1.5)
	유 혹 비	9,155 (7.4)	9,472 (6.4)	8,686 (5.3)	9,579 (5.9)	8,732 (5.8)	8,623 (5.7)	6,349 (4.6)
	허 영 사치심	1,738 (1.4)	2,471 (1.7)	1,181 (0.7)	1,096 (0.7)	889 (0.6)	827 (0.5)	690 (0.5)
	기 타	9,538 (7.7)	11,613 (7.9)	11,171 (6.8)	13,662 (8.5)	12,125 (8.0)	12,100 (8.0)	11,594 (8.4)
사 행 심		1,066 (0.9)	1,383 (0.9)	1,157 (0.7)	1,080 (0.7)	965 (0.6)	858 (0.6)	552 (0.4)
원 한 분 노		1,492 (1.2)	1,870 (1.3)	2,359 (1.4)	1,806 (1.2)	1,628 (1.1)	1,650 (1.1)	1,380 (1.0)
취중(호기심)		12,346 (9.9)	15,637 (10.6)	15,057 (9.1)	13,805 (8.6)	9,305 (6.2)	9,428 (6.2)	7,591 (5.5)
우 발 적		30,813 (24.8)	34,537 (23.5)	35,956 (21.9)	40,254 (25.0)	40,887 (27.1)	41,573 (27.5)	38,648 (28.0)
유 혹		1,278 (1.0)	1,596 (1.1)	1,914 (1.2)	2,354 (1.5)	1,945 (1.3)	1,701 (1.1)	1,385 (1.0)
가 정 불 화		134 (0.1)	153 (0.1)	92 (0.06)	113 (0.07)	150 (0.1)	163 (0.1)	138 (0.1)
부 주 의		16,366 (13.2)	19,925 (13.6)	22,035 (13.4)	21,417 (13.3)	22,849 (15.1)	24,320 (16.1)	20,980 (15.2)
현 실 불 만		1,117 (0.9)	1,693 (1.2)	1,590 (1.0)	1,290 (0.8)	1,281 (0.8)	1,067 (0.7)	966 (0.7)
기 타		37,510 (30.2)	44,162 (30.0)	47,054 (28.7)	52,209 (32.3)	47,517 (31.5)	46,821 (31.0)	45,687 (33.1)

주 : ()안은 점유율임.

이욕난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외의 이용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5) 教育程度別 現況

2001년도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在學 및 졸업자가 57.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26.3%,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10.4%의 순이다. 초등학교 卒業者는 1995년에 2.3% 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1년에는 1.5%로 낮아졌고,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도 감소 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5년에 56.5%이던 것이 2001년도에는 57.2%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8> 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 타
'95	124,244 (100)	177 (0.1)	2,896 (2.3)	39,480 (31.8)	70,199 (56.5)	5,458 (4.4)	6,034 (4.9)
'96	146,986 (100)	190 (0.1)	2,718 (1.8)	45,733 (31.1)	82,880 (56.4)	6,771 (4.6)	8,694 (5.9)
'97	164,182 (100)	171 (0.1)	2,624 (1.6)	47,287 (28.8)	84,987 (51.8)	8,852 (5.4)	20,261 (12.3)
'98	161,277 (100)	226 (0.1)	2,725 (1.7)	48,318 (30.0)	90,558 (56.2)	11,500 (7.1)	7,950 (4.9)
'99	150,821 (100)	256 (0.2)	2,472 (1.6)	42,907 (28.4)	85,731 (56.8)	12,744 (8.4)	6,711 (4.4)
'00	151,176 (100)	118 (0.1)	2,274 (1.5)	43,243 (28.6)	86,721 (57.4)	13,124 (8.7)	5,696 (3.8)
'01	138,030 (100)	276 (0.2)	2,070 (1.5)	36,302 (26.3)	78,954 (57.2)	14,356 (10.4)	6,072 (4.4)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력분류는 각 재학생, 중퇴생, 졸업생을 포함함.

6) 家族關係別 現況

2001년 소년범죄자의 가족관계를 보면, 실부모자가 있는 소년이 73.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실모무부 7.6%, 실부무모 6.9%, 무부모 3.2%, 실부계모 1.1%, 실모계부 0.6%의 순으로 1997년도 이후의 그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순서에는 큰 변동이 없다.

<표9> 청소년범죄 가족관계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미 혼										기 혼
		실부모	계부모	실 모 계 부	실 부 계 모	실 부 무 모	실 모 무 부	계 부 무 모	계 부 무 부	무부모	미 상	
'95	124,244 (100)	93,597 (78.4)	451 (0.4)	727 (0.6)	1,188 (1.0)	6,679 (5.4)	10,520 (8.5)	91 (0.07)	185 (0.1)	3,006 (2.4)	167 (0.1)	7,633 (6.1)
'96	146,986 (100)	112,323 (76.4)	357 (0.2)	783 (0.5)	1,307 (0.9)	8,059 (5.5)	11,656 (7.9)	90 (0.06)	953 (0.6)	2,797 (1.9)	158 (0.1)	8,503 (5.8)
'97	164,182 (100)	127,853 (77.9)	378 (0.2)	903 (0.6)	1,574 (1.0)	9,012 (5.5)	12,143 (7.4)	109 (0.07)	250 (0.2)	3,847 (2.3)	133 (0.08)	7,980 (4.9)
'98	161,277 (100)	119,991 (74.4)	404 (0.3)	1,033 (0.6)	1,807 (1.1)	10,709 (6.6)	13,128 (8.1)	113 (0.08)	162 (0.1)	4,968 (3.1)	129 (0.08)	8,833 (5.5)
'99	150,821 (100)	110,370 (73.2)	377 (0.2)	1,010 (0.7)	1,613 (1.1)	10,572 (7.0)	12,518 (8.3)	90 (0.06)	150 (0.1)	4,735 (3.1)	120 (0.08)	9,266 (6.1)
'00	151,176 (100)	112,398 (74.3)	597 (0.4)	928 (0.6)	1,756 (1.2)	10,590 (7.0)	11,878 (7.9)	107 (0.07)	84 (0.06)	4,934 (3.3)	108 (0.07)	7,796 (5.1)
'01	138,030 (100)	101,867 (73.8)	415 (0.3)	829 (0.6)	1,518 (1.1)	9,524 (6.9)	10,491 (7.6)	96 (0.07)	69 (0.05)	4,416 (3.2)	110 (0.08)	8,695 (6.3)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7) 前科別 現況

2001년도의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을 보면 초범이 63.7%, 전과자가 36.3%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995년에는 23.3%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36.3%로 증가하였으며 소년범의 再犯率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10> 청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초 범	전 과			
			소 계	1범	2범	3범이상
'95	124,244 (100)	95,245 (76.7)	28,999 (23.3)	16,678 (13.4)	6,774 (5.5)	5,547 (4.5)
'96	146,986 (100)	110,639 (75.3)	36,247 (24.7)	19,643 (13.4)	8,508 (5.8)	8,196 (5.6)
'97	164,182 (100)	121,516 (74.0)	42,666 (26.0)	22,067 (13.4)	10,148 (6.2)	10,451 (6.4)
'98	161,277 (100)	108,330 (67.2)	52,947 (32.8)	25,304 (15.7)	12,531 (7.8)	15,112 (9.4)
'99	150,821 (100)	97,475 (64.6)	53,346 (35.4)	24,312 (16.1)	12,291 (8.1)	16,743 (11.1)
'00	151,176 (100)	98,535 (65.2)	52,641 (34.8)	23,794 (15.7)	11,904 (7.9)	16,943 (11.2)
'01	138,030 (100)	87,925 (63.7)	50,105 (36.3)	22,805 (16.0)	10,904 (7.9)	17,116 (12.4)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8) 共犯關係別 現況

2001년도 소년범죄자의 경우 單獨犯이 49.8%이고, 공범이 있는 소년범죄자 중에는 학교동창 관계 비율이 22.9%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동네(고향)친구 9.7%, 군·직장 동료 1.1%, 친·인척 0.9%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소년범죄자 공범관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단독범	공 범 관 계								
			소 계	학교 동창	동네(고향)친구	교도소 등동료	친인척	애인	군·직장 동료	기타	미상
'95	124,244 (100)	51,382 (41.4)	69,234 (55.7)	33,361 (26.9)	16,538 (13.3)	113 (0.1)	1,119 (0.9)	251 (0.2)	2,306 (1.9)	15,546 (12.5)	3,628 (2.9)
'96	146,986 (100)	68,097 (46.3)	73,224 (49.8)	34,401 (23.4)	16,917 (11.5)	131 (0.01)	1,155 (0.8)	325 (0.2)	2,055 (1.4)	18,240 (12.4)	5,665 (3.9)
'97	164,182 (100)	75,622 (46.1)	81,534 (49.7)	38,907 (23.7)	17,341 (10.6)	168 (0.1)	1,191 (0.7)	294 (0.2)	1,827 (1.1)	21,806 (13.3)	7,026 (4.3)
'98	161,277 (100)	70,123 (43.5)	87,762 (54.4)	39,609 (24.6)	19,998 (12.4)	225 (0.1)	1,467 (0.9)	370 (0.2)	1,596 (1.0)	24,497 (15.2)	3,392 (2.1)
'99	150,821 (100)	69,905 (46.3)	77,945 (51.7)	34,010 (22.5)	226 (0.1)	1,478 (1.0)	17,344 (11.5)	407 (0.3)	1,646 (1.1)	22,834 (15.1)	2,971 (2.0)
'00	151,176 (100)	70,106 (46.4)	78,530 (51.9)	36,467 (24.1)	245 (0.2)	1,412 (0.9)	16,893 (11.2)	424 (0.3)	1,596 (1.0)	21,493 (14.2)	2,540 (1.7)
'01	138,030 (100)	68,739 (49.8)	66,807 (48.4)	31,611 (22.9)	276 (0.2)	1,242 (0.9)	13,389 (9.7)	414 (0.3)	1,656 (1.2)	18,219 (13.2)	2,484 (1.8)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3. 學生犯罪 現況

1) 概 況

학생범죄는 199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1년도 학생범죄는 1997년도에 비하여 17.7% 감소하였다.

<표12>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A)
'95	1,804,405 (100.0)	124,244 (100.0)	6.9	82,442 (100.0)	66.4
'96	2,018,296 (111.9)	146,986 (118.3)	7.3	91,750 (111.3)	62.4
'97	2,117,759 (117.4)	164,182 (132.1)	7.8	103,292 (125.3)	62.9
'98	2,341,431 (129.8)	161,277 (129.8)	6.9	99,625 (120.9)	61.8
'99	2,400,485 (133.0)	150,821 (121.4)	6.3	91,942 (111.5)	61.0
'00	2,329,134 (110.0)	151,176 (92.1)	6.5	97,056 (94.0)	64.2
'01	2,426,050 (114.6)	138,030 (84.1)	5.7	85,040 (82.3)	61.6

주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2) 類型別 現況

2001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暴力犯이 4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범 17.2%, 강력범 2.0%의 순이다. 殺人·強盜·強姦·防火·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1998년도에는 그 점유율이 2.8%였으나 2001년도에는 2.0%로 다소 감소했다.

<표13>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폭 력 범		절 도 범		강 력 범		기 타	
	인 원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95	82,442	31,491	38.2	18,552	22.5	2,140	2.6	30,259	36.7
'96	91,750	33,071	36.0	19,575	21.3	2,163	2.4	36,941	40.3
'97	103,292	39,732	38.5	21,178	20.5	2,605	2.5	39,777	38.5
'98	99,625	36,287	36.4	23,624	23.7	2,805	2.8	36,909	37.1
'99	91,942	36,811	40.0	18,743	20.4	2,296	2.5	34,092	37.1
'00	97,056	38,706	39.9	20,219	20.8	2,083	2.2	36,048	37.1
'01	85,040	34,003	40.0	14,631	17.2	1,742	2.0	34,664	40.8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3) 動機別 現況

2001년 學生犯罪을 動機別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 25,598명(30.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주의 15,733명(18.5%), 이욕 8,844명(10.4%), 취중(호기심) 4,932명(5.8%)의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는 유희비 조달이 2,381명으로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표14>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계		82,442	91,750	103,292	99,625	91,942	97,056	85,040
이 욕	소 계	13,172	16,247	13,346	13,200	11,189	10,481	8,844
	생 활 비	617	671	658	707	717	540	595
	유 흥 비	5,169	6,611	4,886	4,323	3,724	3,562	2,381
	허 영 사 치 심	1,126	1,324	775	598	404	367	341
	기 타	6,260	7,641	7,027	7,572	6,344	6,012	5,527
사 행 심		662	678	711	557	496	390	339
원 한 분 노		897	933	1,576	1,085	919	889	851
취 중(호기심)		8,263	9,638	10,486	8,776	5,737	5,910	4,932
가 정 불 화		85	65	57	59	92	108	85
유 혹		775	852	1,150	1,305	1,092	923	765
우 발 적		20,911	21,935	25,821	26,729	27,587	27,479	25,598
현 실 불 만		816	1,328	1,825	1,175	1,075	772	680
부 주 의		13,769	15,038	18,203	16,717	17,312	17,622	15,733
기 타		23,092	25,036	30,117	30,022	26,506	32,482	27,213

주 : 이욕란의 '기타' 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욕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4. 靑少年 癡藥類事犯

1) 概 要

마약류의 남용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犯罪이다. 특히 인성과 사회성의 형성단계에 있는 청소년층의 마

약류 사용은 커다란 社會問題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의 물질만능주의, 향락·퇴폐풍조의 만연, 건전한 인격 형성과는 동떨어진 입시위주의 教育制度, 가족·집단이기주의, 인간관계, 단절에 따른 소외감 등이 청소년층의 마약류 사용을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사춘기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건전한 인격형성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범국민적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檢察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및 언론을 비롯한 전 국민의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마약퇴치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마약류문제도 아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본드·신나 등 환각문질을 남용하다 검거되는 청소년의 수가 1997년까지는 5천명을 상회하였고 최근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2) 推 移



<표15>에서 최근 수년 사이에 국내 마약류사범 團束實績을 보면, 1995년도의 5,418명에서 2001년도에는 10,102명으로 53.6%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의 대표적 남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은 1995년도의 2,767명에서 2001년도에는 7,959명으로 187.6% 急增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供給側面에서 볼 때 마약류 공급선의 國際化, 多邊化되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한탕주의에 편승한 여행객, 유학생등이 마약류 불법거래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需要側面에서는 IMF 경제난의 극복과정에서 양산된 실직자, 사업실패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약을 남용하고 도덕성 상실, 향락풍조 만연으로 연예인, 유학생, 가정주부들이 죄의식 없이 마약류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15>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

연도 죄명	'95		'96		'97		'98		'99		'00		'01	
	계	54,18	(+18.9)	6,189	(+14.2)	6,947	(+12.2)	8,350	(+20.2)	10,589	(+26.8)	10,304	(-2.7)	10,102
마 약	1,135	(-13.6)	1,235	(+8.8)	1,201	(-2.8)	892	(-25.7)	923	(+3.5)	954	(+3.4)	1,482	(+55.3)
대 마	1,516	(+1.1)	1,272	(-16.1)	1,301	(+2.3)	1,606	(+23.4)	2,187	(+36.2)	2,284	(+4.4)	661	(-71.1)
향 정	2,767	(+58.8)	3,682	(+33.1)	4,445	(+20.7)	5,852	(+31.7)	7,479	(+27.8)	7,066	(-5.5)	7,959	(+12. ^)

주 : ()안은 증감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한편, 청소년층의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은 2000년 30명에서 2001년 24명으로 전년대비 20.0%가 감소하였다.

<표16>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연령		14~15		16~17		18~19		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1995	-	-	-	17	15.7	91	84.3	108	100			
1996	-	-	-	12	15.1	67	84.9	79	100			
1997	-	-	-	11	16.4	56	83.6	67	100			
1998	1	0.2	0.2	11	14.3	65	84.4	77	100			
1999	-	-	-	10	20.0	40	80.0	50	100			
2000	-	-	-	2	6.7	28	93.3	30	100			
2001	-	-	-	2	8.3	22	91.7	24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표17>에 의하면, 2001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1,584명으로 이 가운데 19세이하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669명으로 全體事犯의 42.2%를 차지하고 있어 환각물질이 10대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9세 이하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 1,790명에서 2000년도 1,280명으로 28.5%감소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669명으로 전년대비 47.7% 감소하였다.

이 같은 감소추세는 검찰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및 청소년보호법의 강력한 시행과 관련하여 학원폭력, 유흥업소, 주류 판매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 등으로 범죄환경이 크게 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최근의 단속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환각물질 흡입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17> 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

연령 연도	15세 미만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 29세	30세 이상	연령 미상	계
1995	39 (0.6)	508 (8.1)	1,365 (21.7)	1,433 (22.8)	1,024 (16.3)	604 (9.6)	972 (15.5)	146 (2.3)	186 (3.0)	6,277 (100)
1996	31 (0.4)	600 (8.6)	1,518 (21.7)	1,590 (22.7)	1,189 (17.0)	615 (8.8)	1,212 (17.3)	100 (1.4)	148 (2.1)	7,003 (100)
1997	21 (0.3)	416 (6.7)	1,322 (21.4)	1,464 (23.7)	966 (15.7)	625 (10.1)	1,097 (17.8)	174 (2.8)	90 (1.5)	6,175 (100)
1998	8 (0.2)	206 (5.3)	685 (17.5)	766 (19.6)	625 (16.0)	376 (9.6)	967 (24.7)	182 (4.6)	96 (2.5)	3,911 (100)
1999	10 (0.4)	161 (5.6)	414 (14.5)	482 (16.8)	413 (14.4)	310 (10.8)	835 (29.1)	199 (6.9)	44 (1.5)	2,868 (100)
2000	1 (0.1)	118 (5.0)	362 (15.5)	333 (14.2)	287 (12.3)	179 (7.6)	841 (35.9)	185 (7.9)	36 (1.5)	2,342 (100)
2001	3 (0.2)	48 (3.0)	182 (11.5)	170 (10.7)	158 (10.0)	108 (6.8)	689 (43.5)	203 (12.8)	23 (1.5)	1,584 (100)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第3章 青少年犯罪의 理論的 背景과 具體的인 原因分析

第1節 青少年犯罪의 理論的 背景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의 범죄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⁶⁾ 이러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소질과 환경의 상호 규합적인 연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⁷⁾ 아래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心理的 原因



1) 精神薄弱論

이 이론은 범죄인은 대체로 지능이 낮고, 범규범을 이해할 수 없어서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는 이론으로써 고틀드(Henry H. Goddard)의 갈리카크가계(The Kallikak Family)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 범죄자 저능설이 발표됨으로써 많은 지지를 얻었으나 그 후 지능검사법의 발달과 우드워드(M. Woodward)의 저지능과 비행(Low intelligence and Delinquency)등의 연구결과 범죄소년과 비범죄소년과의 지능의 차이는 근소하며 의미 있는 지능차이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이 견해는 부정되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量的 側面에서의 설명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대표자는 웨슬러(David Wechsler)로서 그는

6)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7, p. 75.

7) 신진규, 「범죄학검 형사정책」, 법문사, 1987, p. 95.

지능을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두가 측면에서 측정하고 非行者 그룹에서 정상적인 청년그룹과는 다른 하위검사특점분포(subtest score distribution)의 특징을 발견하였다.⁸⁾ 즉 動作性 檢査의 지능이 언어성 검사의 지능보다 우수하며 동작성 검사 가운데서 비행청소년은 시각 - 동작의 협응(visual-motor coordination)에 있어서 지각적·분석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면보다는 視覺-動作의 협응과 사회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면에서 득점이 높고 하위검사의 득점 분포에 있어서 평균에서의 이탈도가 크다. 이상과 같은 사실 그리고 비행소년의 많은 경우가 사고보다 동작을 수단 삼아 자기자신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웨슬러(David Wechsler)의 지능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결론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放恣한 精神運動型

精神運動型(psychomotor style)은 포티우스(S. D. Porteus)가 미로검사(Maze Test)의 질적 분석에서 사용한 말이다.⁹⁾ 포티우스(S. D. Porteus)는 미로검사를 실시할 때에 피검사자가 검사자의 지시를 지키는 데에는 여러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 그는 비행소년에게는 부주의한 사람, 돌아가야할 모퉁이를 돌아가지 않는 사람, 미로의 가장자리를 거리낌없이 침범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부주의한 과오를 그는 Q득점이라고 이름 지었다. 기븐스(T. C. N. Gibbens)도 포티우스 미로검사와 비행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말하기를, 비행소년의 Q득점이 무비행소년의 득점보다 2배 가까이 높고 또 무성의한 과상적인 연필의 선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육통제가 약함을 밝히고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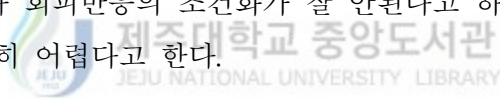
8) 정인석, 「신청년심리학」, 대왕사, 1988, p. 289.

9) S. D. Portues, “Q-score : Temperament and Delinquency”, J. Soc Psychol, 21, 1945, pp. 81-103.

10) H. B. Gibon : “나선형미로조사(spiral maze test)를 실시하여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고”, 1964.

3) 속건화에 대한 抵抗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양심의 기능이 약하든가 없다는 점이다. 프로이트(S. Freud)는 양심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백의상(ego-ideal)을 지키는 문지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올포트(Gordon W. Allport)는 백의상과 가치체계의 발달에 따라 금지·공포·강제의 경험에 힘입어 자존과 당위의 상태로 전환될 때에 양심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아이젠크(Hans Jurgen Eysenck)는 양심을 어떤 유형의 사태와 행위에 대한 조건화된 불안반응(conditioned anxiety response)이라고 보아 양심을 나쁜 행동에 대한 자동적인 회피장치로서 설명하였다.¹¹⁾ 여기서 아이젠크(Hans Jurgen Eysenck)가 말한 조건화된 불안반응이란 파블로프(I. P. Pavlov)류의 조건형성에 의한 조건화된 반응이 확립되기까지의 난이성과 지속성이 비행의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보아서 비행자는 그릇된 행동이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불안반응이나 회피반응의 조건화가 잘 안된다고 하며 특히 정신병질 범죄자는 條件化가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4) 情緒不安

범죄소년이 비범죄소년보다 심한 정서적 갈등을 겪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힐리(W. Healy)와 부르너(A. Bronner)의 선구적인 연구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인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 소년들은 비범죄소년들과는 달리 반항적이고 권위에 대해서 양면 가치적이며, 자기가 만족할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나 원한감을 가지고 있다. 또 타인에 대해서 적의와 의혹감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파괴적·가학적인 경향, 정서변이 등과 같은 성격 특성을 갖게 되고 정서적인 갈등과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기과시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²⁾

11) 정인석, 전계서, p. 292.

12) 안재정, “청소년과 비행”,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재단, 1983, p. 436 ; 정철희,

5) 精神分析 理論

프로이트(S. Freud)는 비행이나 범죄행위 등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의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격의 부조화 때문에 정신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 일종의 ‘검열기구’ (censor) – “바라지 않는 요소를 무의식 속으로 억압함으로써 통일성과 조화를 억지로 의식적인 인격 안에 밀어 넣으려는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 – 로 자리잡는다.

프로이트(S. Freud)는 인간을 갈등적인 존재로 보고 자신의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갈등은 ‘리비도’(libido)라고 하는 본능으로 집약되는데, 리비도라 함은 사람의 욕구, 자극, 충동을 통제하는 힘을 의미한다.¹³⁾ 후에 그는 인격을 균형있게 만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드’(id)는 생물적 또는 심리적 충동이나 자극을 모아놓은 무의식의 부분이다. 이 이드는 주로 性的 충동인 리비도를 포함한다. ‘초자아’ (super-ego)는 자기비판과 의식을 포함하는 무의식의 부분이다. 초자아는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화되고 내면화된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인격의 의식적인 부분이 바로 ‘자아’ (ego)이다.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할 때 면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가 그 갈등을 무의식 속으로 억압한다. 이 갈등들은 나중에 콤플렉스 또는 범죄행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이트(S. Freud)의 이론에 의하면 범죄란 ‘억압된 인격적인 경험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치료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억압된 갈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청소년비행의 원인분석에 관한 고찰”, 「논문집」 제17집,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1987, p. 122.

13) William V. Pelfrey, Ph.D. 이재경 역, 『범죄학 입문』, pp. 46-47.

2. 社會的 原因

1) 아노미(anomie)理論

아노미는 근대 범죄학의 중요한 기본개념에 속한다. 아노미 개념은 ‘無法狀態’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며, 두 사람의 이론가, 즉 뒤르켐(E. Durkheim)과 머튼(Robert K. Merton)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아노미개념은 학자에 따라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먼저 뒤르켐(E. Durkheim)은 주요저작인 ‘社會分業論’과 ‘自殺論’에서 사회가 개인의 자연발생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無規制’(deregulation) 내지 ‘無規範’(normlessness)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아노미개념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일탈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뒤르켐(E. Durkheim)의 아노미이론은 그 정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지만 사회질서의 본질과 사회통합이 범죄와 일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의 착상은 범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범죄와 일탈을 설명하는 기초로 사용되었다.

아노미 개념은 특히 북미 사회학에서 계승·발전되고 이론적으로 정제되었다. 아노미 개념은 이제 無規範의 현상들을 기술하는데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무규범의 생성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주로 머튼(Robert K. Merton)이 이러한 측면에서 이론을 구성하였다.¹⁴⁾ 머튼(Robert K. Merton)은 뒤르켐(E. Durkheim)의 이론을 미국사회에 적용했지만 뒤르켐(E. Durkheim)처럼 급속한 사회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아노미개념을 수정하여 비행문제에 적용했다. 머튼(Robert K. Merton)은 사회규범(또는 가치관)을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가치 있는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는 적법한 사회적 수단에 대해 논하였다. 사회 성원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으면서도 목표, 특히 경제적인 성공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병리적 사회구조가 하위계층에 긴장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아노미적 상황이 하층계급의 높은 범죄율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의 전반적으로 높은 범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구조의 아노미에 대한 머튼(Robert K. Merton)의

14) Günther Kaiser, Kriminologie. Eine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8., neubearbeitete und ergänzte Auflage, Heidelberg 1989, S. 220.

연구는 특히 청소년 비행의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머튼(Robert K. Merton)의 이론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연구와 비평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여러 가지의 변형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머튼(Robert K. Merton)의 이론에 대한 확장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코헨(A. K.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과 리차드(Albert K. Cloward)와 올린(Lloyd E.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을 들 수 있으며, 이 이론들은 머튼(Robert K. Merton)의 이론을 수정하여 하위계층의 비행행동에 아노미를 적용했다. 머튼(Robert K. Merton)의 이론 및 이에 유사한 이론들은 오늘날 緊張理論이라고 불리고 있다. 코헨(A. K. Cohen)은 비행하위문화가 어떻게 해서 전개되는가를 처음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고, 리차드(Albert K. Cloward)와 올린(Lloyd E. Ohlin)은 하위문화의 유형이 비행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데 불리하며, 그 결과 일어나는 일탈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1) 뒤르껁(E. Durkheim)의 理論

뒤르껁(E. Durkheim)은 범죄학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뒤르껁(E. Durkheim)의 이론은 비단 범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있다. 그의 주된 관심들 중 하나는 19세기 서구 유럽의 변화상, 즉 농경사회에서 도시 산업화로의 전환이 몰고 온 사회적 변화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뒤르껁(E. Durkheim)은 1983년에 처음 간행된 저서 ‘社會分業論’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에서 다양한 사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결속의 원천을 분석하였다.

뒤르껁(E. Durkheim)의 사회진화론은 사회유형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機械的 連帶(mechanical solidarity)에 의해 통일되는 분절된 원시사회와 有機的 連帶(organic solidarity)가 특징인 조직적인 사회가 그것이다. 완전히 기계적이거나 완전히 유기적인 사회는 없다. 아무리 원시적인 사회라도 모종의 분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무리 진보된 사회라도 구

성원간에 어느 정도의 획일성이 필요하다. 사회 발전은 기계적 유형에서 유형으로 진화하며 각각의 사회는 약극단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¹⁵⁾

뒤르켐(E. Durkheim)은 이러한 분류에 입각하여 그 사회의 지배적인 성격이 법의 기능, 범죄의 기원 등과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법은 두 가지 형태의 사회 모두에서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방법은 사뭇 다르다. 기계적 사회에서 법은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따라서 당시의 규범을 벗어난 모든 일탈을 억압한다. 반면에 유기적인 사회에서 법은 사회 각 부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거래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시킨다. 법이 두 가지 형태의 사회에서 전혀 다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범죄도 아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뒤르켐(E. Durkheim)은 사회가 기계적 형태로 남아있는 한 사회에 범죄가 없다는 것은 그 사회가 병적으로 과도하게 통제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는 유기적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소위 ‘아노미’라는 병적인 상태가 출현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는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¹⁶⁾

(2) 머튼(Robert K. Merton)의 理論

머튼(Robert K. Merton)은 1938년에 발표된 ‘사회구조와 아노미’라는 논문¹⁷⁾에서 미국사회의 일탈을 설명하기 위해 아노미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어떻게 사회구조가 특정인에게압력을 가하여 동조행위보다는 비동조행위를 하도록 만드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개인적인 원인보다는 범죄율의 차이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머튼(Robert K. Merton)은 모든 사회구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 요소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이다. 사회는 추구할만한 가치

15) Steven Seidman(박창호 옮김), 지식논쟁, 문예출판사, 1999, p. 108 ; John Sanderson (김형만 · 이동원 공역),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 p. 159.

16) Vold/Bernard/Snipes(우범형사정책연구회 역), 「범죄학이론」, 길안사, 2000, p. 147 이하.

17) Robert K. Merton, “Soci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 672-682(1938).

가 있는 특정목표를 제시하고 강조한다. 머튼(Robert K. Merton)은 미국의 문화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란 ‘아메리칸 드림’ 또는 성취의 표시인 ‘부의 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요소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용인되는 제도화된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은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문화에서 부를 달성할 때 이용해야 할 제도화된 수단은 일반적으로 ‘중산계급 가치관’ 또는 ‘프로테스탄니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윤리는 근면, 정직, 교육 그리고 만족의 지연을 포함한다. 완력과 부정수단은 부를 얻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사용은 금지된다.¹⁸⁾ 이처럼 머튼(Robert K. Merton)의 아노미이론은 범죄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의 일탈개념은 비교적 포괄적이다. 주목할 것은 정당한 수단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불법적이거나 사회가 강조하지 않는 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더 쉽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머튼(Robert K. Merton)이 그의 연구를 통하여 한결같은 예로서 r경제적 성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만이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주요목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¹⁹⁾

머튼(Robert K. Merton)의 주된 가설은 사회학적 견지에서 볼 때 逸脫行動이란 문화적으로 유인된 목표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 단절되어 있다는 징후라는 것이다. 따라서 머튼(Robert K. Merton)이 주로 관심을 가진 사회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에 대해서는 강조되지 않는 아노미사회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노미사회가 행동을 통제할 규범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머튼(Robert K. Merton)이 주장하는 바는 수단보다는 문화적 목표에 대한 情緒的 支持가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목표달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아노미 상태에 빠져든다. 결국 아노미가 일탈행동을 유발한다. 逸脫行動에 대한 압박은 미국처럼 기회평등 이데올로기와 사실상의 기회불균등이 대립되는 곳에서는 더욱 강해진다. 이때 사회적 사회적 목

18) Vold/Bernard/Snipes, 전계서, p. 182.

19) William V. Pelfrey(이경재 역), 「범죄학 입문 - 범죄학이론의 발전과정」, 길안사, 1996, p. 55.

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이 무능력 탓으로 여겨진다.²⁰⁾

미국사회는 富의 추구의 중요성과 성공의 神話를 가정, 학교, 직장, 언론을 통하여 미화시키고 강화하는 등 한없이 열망을 조장하고 있지만,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조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이상은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은 최종적인 종착점이 없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합법적인 기회는 사실상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된 수단을 고수할 경우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좌절감을 맛볼 수 있다. 게다가 부를 성취한 사람이 비록 그 부가 적당한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위신과 사회적 지위라는 사회적 보상을 받는다면 제도화된 수단에 상당한 긴장을 가져온다.²¹⁾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미국인의 중요한 덕목인 野望은 오히려 非行行爲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²²⁾ 그렇게 본다면 머튼(Robert K. Merton)의 이론에서 아노미는 무규범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변형이론

(1) 배경과 초점

1950년대는 변영과 거대한 소비자 운동의 발흥기였다. 중산층의 가치관이 우열하다고 여겨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중산층 이외의 방식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기운과 더불어 교육받을 권리를 처음으로 모든 미국인이 공유하게 되었다. 公教育이 미국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동시에 미국에서 절정에 달한 도시화는 점차 퇴폐적인 도시 중심 지역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중산층이 사는 교외지역이 개발되었고, 처음으로 필라델피아 밖에 주택지대가 건설되었다. 연방 대심원은 人種分離를 불법으로 심판했지만 경제적·지역적 경계는 이

20) Neumann/Schroth, a.a.O., S. 67.

21) Vold/Bernard/Snipes, 전게서, p. 183.

22) Pelfrey, 전게서, p. 56.

미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도시의 문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 주로 하층민의 문제였으며, 갱은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비행이었다. ‘우리과 그들’(we-they)을 분리하여, 중산층 미국인은 자신이 하층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그 당시의 범죄학 이론들은 대부분 소년비행에 초점을 두었다. 많은 이론가들이 가장 흔한 형태의 비행으로 생각했던 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시카고학파가 연구한 문화가 새로운 사회학적 용어인 ‘下位文化’(subculture)로 일컬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非行’과 ‘下位文化’라는 두 가지 주제를 결합하여, 범죄학자들은 갱비행을 연구하고 비행하위문화에 대한 이론화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차드(Albert K. Cloward)와 올린(Lloyd E. Ohlin)은 도시의 하층류, 남성 갱비행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2) 非行下位文化理論

코헨(A. K. Cohen)은 1955년에 출판된 ‘非行少年’ 이란 저서²³⁾에서 어떻게 해서 비행하위문화가 이어나는가의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코헨(A. K. Cohen)은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후, 일탈행동이 하류층의 남성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갱비행이 가장 흔한 형태임을 주목하였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비행이 非功利的이고, 惡意的이며, 부정적인 행동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성인범죄와는 달리 청소년 갱들은 그들의 필요에 상관없이竊盜를 하고 악의적으로 재물을 부수고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느끼고 중산층의 가치관을 비웃고 있다는 것이다. 코헨(A. K. Cohen)은 머튼(Robert K. Merton)의 아노미이론으로는 이러한 비공리적 비행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머튼(Robert K. Merton)의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얻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들이 범하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실상 불법적 방법으로 수입을 얻거나 물질적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행 동료들 사이에서 지위를 얻기 위한 지위좌절에 대한 비공리적 대응이

23) Albert K. Cohen, Delinquent Boys : The Culture of the Gang. New York : Free Press(1955).

라는 것이다.²⁴⁾

머튼(Robert K. Merton)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공이란 문화목표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코헨(A. K. Cohen)은 청소년들이 동료들 사이에서 지위라는 목표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년들이 모두다 지위를 놓고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다. 하류층 소년들은 사회구조내에서의 위치로 인해 物質的·象徵的 利點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끼리만 경쟁한다면 바탕이 대체로 균등하지만 중산층 소년과 경쟁할 때는 하류층 소년이 불리하다. 하류층 소년들이 통상함은 물론이고 하류층 소년이 달성하기 어려운 일련의 기준인 ‘중산층의 잣대’를 사용하는 성인들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경쟁의 와중에서 소년들은 동료학생과 교사들 가운데서 지위추구의 바탕을 잃게 된다. 그러한 상실감을 크게 가진 학생은 지위 좌절감을 겪는다.

코헨(A. K. Cohen)은 Freud의 逆反應(reaction formation) 심리기제(불안을 극복하려는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중산층 가치관에 대한 과잉 적대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하류층 자녀들이 이같은 지위 좌절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일어난다. 이때 중류계층의 가치에 계속해서 동조하는 경우에는 동료들 사이에서 낮은 지위에 만족해야 한다. 한편 일부 소년의 경우 ‘중산층의 잣대’에 대한 적응이 지위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 해결책은 지위 획득의 準據基準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지위 기준을 공동으로 확립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 형태인 비행 하위문화가 하층 지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다. 이같은 비행 하위문화가 갱비행의 비공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부정적인 성격을 만들어 준다.²⁵⁾

요컨대 많은 하류층 자녀들은 지위복표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무력함이 가져다 주는 좌절감을 겪은 후, 지위의 挫折感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중산층의 가치체계를 버리고 다른 하류계층과 동료집단을

24) Frank P. Williams/Marilyn D. Mcshane(박승위 역), 「사회문제론」, 민영사, 1994, p. 70.

25) Williams/Mcshane, 전제서, p. 82.

형성하여 자신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항규범을 만든다. 그 결과 下位文化가 형성되어 불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3) 差別的 機會理論(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차별적 기회이론은 리차드(Albert K. Cloward)가 1959년에 쓴 논문²⁶⁾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리차드(Albert K. Cloward)는 머튼(Robert K. Merton)의 아노미이론이 단지 하나의 기회구조만을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제2의 기회구조가 있음을 논하였다. 문화적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길(불법적 기회구조)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1960년에 올린(Lloyd E. Ohlin)과 공동 저술한 ‘非行과 機會’라는 저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론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두 번째 기회의 원천이다.²⁷⁾

머튼(Robert K. Merton)의 아노미이론은 적법한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하층민들이 불법적 기회에 접근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리차드(Albert K. Cloward)와 올린(Lloyd E. Ohlin)은 이러한 전제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일탈행동이 유발되지 않으며 동시에 불법적인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불법적인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적법한 수단이 박탈되면 비행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긴장이 형성되지만 어떤 종류의 비행에 연류될 것인가는 어떠한 불법적 기회가 그들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소수 인종이나 민족의 소년들 특히 대도시 중심가의 하위계층 청소년들이 취하는 하위문화나 집단 비행의 형태는 그들의 성장 공간인 地域社會가 제공하는 기회구조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코헨(A. K. Cohen)은 ‘하나의 비행 하위문화’만을 가정한 반면 리차드(Albert

26) Richard A. Cloward, “Illegitimate means, anomie, and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 1959, pp. 164-176.

27) Williams/McShane, 전제서, p. 84이하.

K. Cloward)와 올린(Lloyd E. Ohlin)은 3가지 유형의 하위문화를 상정했다.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불법적 기회에 따라 다소 특정화된 비행하위문화가 형성된다.

첫 번째 특성화된 비행 하위문화의 주요 유형은 ‘犯罪的 下位文化’(criminal subculture)이다. 이것은 이미 불법적인 기회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노동계급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범죄를 가장 적합한 기회구조로 보았다. 성인 범죄자들은 돈벌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적법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범죄수행 모델과 기회를 제공하며 그 결과 청소년갱단들은 절도, 공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를 주로 저지른다.

두 번째 비행 하위문화의 주요 유형은 ‘葛藤的 下位文化’(conflict subculture)이다. 이것은 합법적 기회구조와 불법적 기회구조가 모두 결핍되어 있는 지역 즉 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에서 발달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성인 역할 모델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비행활동은 갱단들간의 싸움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여기에서 지위나 명성은 사납고 공격적이며 싸움을 잘하면 얻어진다.

세 번째 비행 하위문화의 유형은 ‘逃避的 혹은 二重失敗的 下位文化’(retestist or double-failure subculture)이다. 이것은 일탈적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지만 역제가 내면화되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주로 약물과 알콜중독에 찌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허용되는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목표와 수단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직업적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활한 사기꾼도 못되고 사나운 싸움꾼도 못되는 것을 뜻한다. 그들의 주된 초점은 약물에 주어지고 그들의 갱관련 활동은 약물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다.²⁸⁾ 도피적 하위문화는 본질적으로 머튼(Robert K. Merton)의 개인적 적응형태인 도피형의 집합적 형태인 것이다.²⁹⁾

28) Williams/McShane, 전게서, p. 85이하.

29) Liska/Messner, 전게서, p. 50.

3) 結 論

아노미 이론과 더불어 하위문화 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범죄학을 주도했고 범죄와 비행에 대한 사회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아노미이론의 가정과 논리를 확장하면 미국사회의 높은 범죄와 비행률은 문화적 목표인 경제적 성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노미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은 이들에게 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적버한 기회를 가질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기회가 불평등. 비행 하위문화, 불법적 기회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의 비행조직이 형성된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하위문화를 대신할 문화를 직접 심어주고 법준수 모델과 적법한 기회를 제공하면 범죄는 방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차드(Albert K. Cloward)와 올린(Lloyd E. Ohlin)의 이론적 명제는 1960년대에 뉴욕에서 시도된 ‘청소년에게 활력을’(Mobilization for Youth)이라는 프로젝트에 구체적인 기반이 되었다. 지역공동체에 근거한 비행예방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의 교육적·직업적 소양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좀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들이다. 이러한 착상은 Johnson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Lyndon John's War on Poverty)의 기초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정치적 저항에 부딪쳐 좌초하고 말았다.³⁰⁾ 불우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노미이론의 기본논리는 계속해서 범죄와 일탈을 다루는 다양한 사회정책의 기초가 되어왔다.

4) 烙印理論(labeling theories)

낙인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추구하는 정적인 실체로 일탈을 해석하지 않고, 일탈

30) Vold/Bernard/Snipes, 전제서, p. 192.

자와 비일탈자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 과정으로 이해한다.³¹⁾ 결과적으로 낙인이론은 “무엇이 일탈행위를 야기하는가” 라는 의문 대신에 “누가 누구에게 낙인을 지우며, 그 낙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를 의문의 주체로 삼는다. 즉, 상호작용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누구의 행위를 일탈로 해석하며, 이러한 해석이 상호작용의 당사자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심의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일탈의 낙인을 지우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법과 질서는 물론 관습적 도덕성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미 도덕성과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사람들에게 일탈적 낙인을 붙이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낙인이 붙게 된 일탈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낙인이 붙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일탈자와 하등의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일탈자로서의 낙인은 도덕적 열등성을 부과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일탈자가 비일탈자에 비해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을지라도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방법상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탈자로서의 낙인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일탈의 낙인이 그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어느 개인이 일탈자로서 낙인이 붙게 되면 그는 지속적으로 사회 통제기관과 사회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며,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합법적 기회로부터 점점 제외되고 격리되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과 유사한 낙인 소유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이 관습적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일탈적 생활에 침잠하게 되며 자신을 내쫓긴 집단의 일원으로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Garfinkle은 이렇게 거역할 수 없고 영속적인 낙인을 초래하는 것을 ‘성공적인 비하의식’ (successful degradation ceremonies)이라고 부른다.³²⁾

한편, 일탈적 낙인이 초래하는 또 다른 부정적 결과는 부정적 자아관념의 문제이다. 자신에게 일탈자로서의 낙인이 붙게 되면 급기야 일탈자 스스로의 눈으로도 자신이 일탈자가 되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낙인은 부정적 자아관념을 심어 주게

31) 이윤호, 「형사정책」, 박영사, 1996, pp. 239-241.

32) Harold Garfinkle, “Conditions of Successful Degradation Ceremon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56, 61 : pp. 420-424.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낙인은 부정적 자아관념을 심어 주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낙인은 정상적 자아관념을 일탈적 자아관념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사회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자신에게 일탈자로서 낙인이 붙게 되면, 스스로를 일탈자로 치부하게 되어 소위 일탈적 행위를 지속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낙인이론을 요약하자면 다양한 원인과 영향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행행위의 결과로 붙게 된 공식적 낙인이 그 행위자를 관습적 사회와 기회로부터 격리·소외시킨다는 것이다.³³⁾ 따라서 합법적 기회가 제한되는 반면, 불법적 기회가 증대되는 차별적 기회구조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동료의식과 지원을 찾아 유사한 일탈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되어 범죄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아관념을 갖도록 하여 일탈자로서 자아관념과 지위에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지위와 자아관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탈을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3. 小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범죄는 주로 사회적 미성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사회적 미성숙은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게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예컨대 가정환경, 학교환경, 기타 사회환경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범죄에 몰들 수 있는 근본적 기회를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33) 이윤호, 전계서, P. 241.

第2節 青少年犯罪의 原因分析

1. 家庭的 要因

가정은 부모의 애정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로서 청소년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며 활동과 생활의 본거지이다. 따라서 가정은 성인에 비해 感受性이 훨씬 예민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³⁴⁾ 그러므로 가정 내지 가족관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즉 가정에 결함 내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인격을 범죄에 친화성있는 방향으로 형성케 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가정적 결함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빈곤가정, 가족원 중에 범죄자, 부도적자, 알콜중독자 등이 있는 부도덕가정, 가족간에 감정, 이해관계, 가치관 등에 갈등이 있어 융화가 결여된 葛藤家庭, 고아원 기타 양육시설이 가정의 역할을 하는 시설가정, 그리고 양친 또는 그 어느 일방이 없는 缺損家庭으로 나눌 수 있다.³⁵⁾ 이 중에서도 과거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의 가정적 결함 중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은 缺損家庭이라고 하나,³⁶⁾ 오늘날의 결손가정은 결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다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나 신경질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부모가 있는 가정, 부부싸움이 심한 가정, 맞벌이 부부가정, 방임가정 등 가정의 기능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능적 결손가정(quasi-broken home)에서 犯罪少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는 그들 자신의 사회, 직장생활로 인하여 자녀에게 무관심하거

34) 신진규, 전계서, p. 134. : 정영석·신양균, 전계서, p. 140.

35) Sutherland는 비행소년의 출신가정이 가지는 특징으로서, ① 가정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범죄자이거나 비도적이거나 알콜중독자인 점, ② 부모의 일방이 사망·이혼·유기로 없는 점, ③ 무지나 무관심, 질병으로 부모의 통제가 없는 점, ④ 구성원 한 사람에게 의한 전횡, 편애, 지나친 간섭, 지나친 엄격, 소홀, 질투, 과밀가정, 친지의 간섭 등으로 나타난 가정불화, ⑤ 종교나 다른 문화적 차이, 관습이나 규준의 차이가 있는 점, ⑥ 실업·빈곤·맞벌이·가계관리의 허술 등에 의해 경제적 곤란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E. H. Sutherland and D. R. Cressey, *Criminology*, 10th ed., New York : J. B. Lippincott Co., 1978, p. 212.

36) Glueck부부에 의하면 비행소년 중 60.4%가, 무비행소년은 34.2%가 결손가정 출신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양군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Sheldon and Elednor T. Glueck, *Unravelling Juvenile Delinquency*, 3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 122.

나 방임적이며 대화의 기회가 적고 금전으로써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³⁷⁾ 특히 부모가 있는 청소년의 소년범죄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중류생활을 하는 청소년의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오늘날 가정이 청소년에게 정서안정 기능이라던가 교육적 기능 같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教育制度의 要因

靑少年들을 挫折과 失意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와 教育制度를 들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만큼이나,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장래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기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그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자체이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학교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의 한 과정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부모나 교사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즉 공부를 못함으로써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장래에 대한 좌절감으로 더욱 더 공부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결과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친구들이나 이미 비행을 저지른 친구들과 어울려 사소한 비행부터 시작하여 마침내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기대와 본인의 희망이 차이가 큰 경우, 즉 부모가 자녀에게 과잉기대를 하는 경우와 학교 선생님들이 성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만 관심을 갖거나 하시는 말씀 중에서 공부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던지 하는 등의 공부에 대한 편력이 많은 경우, 비행시기도 빠르고 그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⁸⁾ 한편 우리사회의 입시위주의 教育制度는 불

37) 안재정, 전계논문, p.446.

38) 김준호,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연구 -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p. 115.

가피하게 脫落 또는 不適應學生 등을 양산시키고 있는데 이는 문제청소년의 구조적 생산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사회의 가치가 다원화되지 못하고 모두가 대학진학을 선망하는 사회에서는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 없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좌절감 때문에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고교생이 소년범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학생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러한 敎育制度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社會的 要因

靑少年犯罪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文化葛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향, 교우집단의 상호작용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文化葛藤(culture conflict)이란 사회적 가치, 이해 및 규범 등이 어떠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조화가 없다던지 혹은 차질이 생기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사회적 조건, 말하자면 사회적 가치, 이해 및 규범 등의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高度産業化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는 개개인의 심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종적인 인간관계를 횡적인 인간관계로 변화시켜 세대간의 불신을 빚어내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 또는 오해로부터 갈등국면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곧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가치신념 체계에서의 부적응 또는 개인의 욕구불만 등은 개인적인 절망과 허무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위기를 조성한다. 이처럼 가치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갈등은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증가원인의 되고 있다.³⁹⁾

두 번째,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이 직접·간접으로 범죄에 밀접한 影響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이론⁴⁰⁾으로서는 ① 단기효과(immediate reaction)이론으로 캣츠(E. Katz), 버코비츠(L. Berkowitz), 윌슨(B. Wilson)등의 주장에 의하면 매스미디어는 폭력을 위장해서 묘사, 표출함으

39) 박성덕, 「청소년범죄에 대한 주요국의 선도보호제도와 교정교육제도」, 「입법조사월보」, 통권 205호, 국회도서관, 1991, 12, p. 134.

40) 정영석·신양균, 전게서, p.237.

로써 시청자의 모방 행위를 야기하고 범죄의 수법이나 과정 등을 시사해 주며, 폭력을 이상화 또는 영웅화하여 미화시킴으로써 직접 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② 장기효과이론에서는 매스미디어와 범죄의 관계를 태도, 성향 내지 감수성의 문제로 보아 매스미디어는 취미생활의 변화를 조장하고 건전한 정신 발달을 저해하며 취미를 편협하게 만들어 일반적으로 暴力, 犯罪, 娛樂에 탐닉하게 하고 범죄를 미화하여 범죄동경으로 가치관을 변화 시키거나 범죄에 대한 무비판적, 무감각적 성향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교우집단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있어서 교우관계는 어느때 보다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친구간의 우정을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중시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는 등의 비장한 결의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4. 矯正機關에의 要因



靑少年犯罪는 개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깨뜨리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범죄는 그들 개인에게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에 대한 矯正(correction)과 處遇(treatment)의 의의도 그들의 범죄성향을 제거하고 수정하여, 개인적으로는 삶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배우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의 위치에서 보람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도와주는데 있다.

이러한 면에서 少年院이나 少年矯導所 등의 현실을 살펴보면 수용 인원의 과다, 기능 및 처우내용의 미분화, 직원들의 자질부족 등 교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⁴¹⁾ 따라서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정시설내에서 범죄기술 및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을 가르치고 조장시켜 역효과를 내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력이 있다는 낙인이 오히려 범죄소년의 사회복귀에 지

41) 최근혁, 「한국의 청소년문제와 관계법령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p. 56.

장을 초래하여 시설내 처우는 再犯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범죄소년은 警察, 檢察, 法官 그리고 少年法院의 심리와 감별소에서의 수용과 진단 등의 형사사법절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회적 지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2차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拘禁 狀態에서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된다면 사회복지 를 곤란케 할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⁴²⁾ 특히 소년원에 수용된 경력이 있다면 형집행정료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가 대체로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정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2) 김형청, “소년범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안논총」 제2집,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85. p. 38.

第4章 青少年犯罪에 대한 對策

第1節 青少年犯罪에 대한 各國의 對策

1. 美 國

미국에서의 靑少年은 14세에서 24세까지 논의되기도 하고, 18세 미만이 중심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이상에서 20세 정도에 이르는 연령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에 관련된 각종 연구 통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자료 기준은 없으며, 목적과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 중에서 30.9%에 해당하는 1,968만명이 소수 인종이다. 미국 청소년에 관한 한 자료는 미국 전역에서 매일 적어도 2,478명의 학생이 탈락하고 2,700명 이상의 10대 소녀가 임신하며, 4,900명의 청소년이 폭력 행위에 희생된다. 또 2,000명 이상의 10대들이 가출하고 하루 평균 7명의 청소년이 살해되고, 약 1,300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기도하며, 그 중 13명이 결국 목숨을 버린다는 엄청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⁴³⁾ 이와 같이 당면한 청소년범죄의 해결을 위해 미국 사회의 청소년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미국사회는 사회자체가 多樣性에 기초를 둔 사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조직화된 제도로써 정책의 체계적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찍 발달된 敎育自治制와 實用主義의 追求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으로 청소년 사업도 지역에 따라 독특한 인종, 인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요건, 교육등의 특색을 고려해서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둘째, 미국사회의 제도적으로 보장된 多樣性이란 특성은 청소년 활동이 실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 단체활동의 경우 활동 특성과 사업은

43) 이상원,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pp. 30-31.

용의 방법 및 직원 충원 등 단체들간에는 물론 동일한 단체내에서도 각기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自願奉仕者의 지도력 훈련 및 충원에 청소년 정책의 역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는 청소년 단체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주로 의존하기 있기 때문이며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역할은 집단, 클럽, 분단 및 팀의 지도자, 코치, 안내자 등 단체별로 다양하다.

넷째, 미국의 청소년 政策事業과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과정과 시설에 주어지고 있을 만큼 청소년사업의 내용과 규모는 방대하다.

다섯째, 미국의 청소년 활동은 일단 청소년 사업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야외 활동시설에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연령, 문화,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한 특수 그룹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시설도 많이 있다.

여섯째, 미국의 청소년활동은 교육기관에서부터 宗教機關, 警察, 社會團體들이 다양하게 설립목적과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의 경우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자금 모금사업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단체에 대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계약의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 유럽地域

1) 英 國

영국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서비스의 전달과 지원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진행된다. 청소년 서비스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개인의 발달과 비공식적 社會教育의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청소년 서비스란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

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그것은 더 넓은 발달과정의 한 부분이며,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살고있는 사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일반적인 정책은 교육성에 의해서 세워지며 그 안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함께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센터와 그들이 소유한 클럽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조직체의 활동에 보충된다.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自願團體의 協議體로 구성된 靑少年委員會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는 장치를 마련되 있다.⁴⁴⁾ 이와 같은 청소년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현재 많은 단체들은 1991년 정부의 후원하에 개최된 국가적인 차원의 회의에서 합의된 성명서에 따라 그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영국의 청소년 정책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활동의 목표는 불평등의 모든 형태를 바로잡고 모든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가능성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성인으로 자라나는 동안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는 자원단체와 지방정부와의 동반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靑少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교육적인 활동의 기회로서 청소년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위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게 하고있다.

둘째, 사회적인 능력의 제공으로서 청소년들의 삶, 다른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한부분을 차지하는 地域社會의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인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비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개발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교육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다.

넷째, 시설과 인간관계로서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

44) 이상원, 전게서, pp.32-33.

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갖고 안정감과 가치로움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다섯째, 적절한 情報와 諮問, 그리고 相談활동을 통하여 이를 이용할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수년동안의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표준을 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청소년 활동을 위한 중점교육 과정의 발달을 통해서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관련 요소들의 결합력을 더 크게 만들어 내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즐기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靑少年을 보통 13세에서 20세까지의 연령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12%에 해당하는 650여만명이 청소년이라 한다.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청소년 체육부의 정부차관실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체육부문을 제외한 순수한 청소년 관련분야는 정부차관실의 靑少年 團體 生活部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정책실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서에서 행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을 사회와 직업에 적응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여가와 문화에 접근시키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方向은 국가의 여러 법령 가운데 가족법, 대중위생법, 사회복지법 등의 사회법체계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한다.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흐름은 정부예산이 청소년 부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정부예산의 0.2%를 청소년 체육부에서 사용하고 이중 1/4이 청소년 부분에 투자되며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체육청소년부의 정부차관실의 청소년 단체

생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할국과 대외업무 부서가 산하기관 및 단체등을 통하여 전달 진행한다

3. 日 本

일본의 청소년은 총인구의 20.8%인 2천6백만명 정도이고 그 중 학생이 118만 명이다. 이들중 770여만명의 청소년 취업자이며 전체인구의 취업자중 12.65%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중 도매, 소매업, 음식점이 28.9%, 서비스업이 24.7%, 제조업 24.6%로서 3차산업이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형벌법에 보도된 14~19세의 청소년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다. 형사범 소년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절도가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14~16세의 저연령층의 전체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교내폭력, 가정내 폭력 등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폭주족, 신나 등의 남용 및 좌절과 무기력의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일본은 청소년 육성의 기본방향은 高齡化, 國際化, 情報化 등의 사회적 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창조적이고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자질과 의욕을 가진 청소년을 육성하는 정책에 두고 그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 세부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自願奉仕 활동인 복지시설에서 활동 등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고 사회연대의식을 키우며 청소년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청소년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지역내에서 세대간의 對話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둘째, 청소년 國際交流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참가를 촉진해 나가며, 외국어와 외국문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정보화에 대응하는 육성 방향으로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숙박 체험과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선택, 활동능력을 높인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4. 綜合的인 檢討

각국의 청소년 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청소년들의 학업 증진을 목표로 하는 教育政策 뿐만 아니라 靑少年 指導, 福祉 및 文化라는 측면에서 국가별로 독특한 청소년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서비스 또는 청소년 개발의 개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영국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서비스 또는 청소년 서비스라고 표현되는 정책분야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왔다.⁴⁵⁾ 프랑스의 경우 소그룹을 중심으로하여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非行의 직접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선진 각국들은 청소년 정책의 내용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시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 서비스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통한 靑少年들의 개인적인 발전과 비공식적인 사회교육의 증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책 전반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여가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회교육의 기회와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청소년 육성의 기본 방향을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큰사회적인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자질과 의욕을 가지고 활력이 충만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에 두고 自願奉仕 활동이나 봉사시설에의 참가 등 청소년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사회와 직업에 적응시키는 것, 청소년들에게 여가와 문화에 접근시키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등의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의 基本方向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끝난 후 찾아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 그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지도감독과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화된 활동등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각국의

45) 이상원, 전거서, p. 39.

靑少年 政策은 地方分權的이며 복합적이지만 中央政府가 통합하여 조정하고 있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셋째, 선진 각국의 敎育制度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문과 직업의 두분야로 진로가 일찍 결정되며 다양한 선택의 가치가 제공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일본의 경우도 학제상 우리나라와 같은 단선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업교육의 기회가 많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획기적인 敎育제도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학제는 복선형의 敎育체계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진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1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 의해서 일찍 결정된다는 점에서 敎育체계는 閉鎖的의型이라 다소 비민주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敎育은 주로 주 정부의 권한으로써 敎育자치제의 실시와 實用主義를 중요한 敎育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敎育제도는 중앙집권적 敎育행정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학교 조직은 없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문제와 대책을 비교해 보면 <표18>과 같다.⁴⁶⁾

< 표18 >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비교

특징 구분	미 국	영 국	프랑스	일 본	한 국
敎育제도 주 권 한	주단위별	지방정부	정 부	정 부	정 부
청 소 년 정 책	연방정부 지원 사업 추진	지방정부와 자원단체 동반 관계	정부의 청소년 체육부 주관	정부의 권한 하에 집행	정부 주도하에 시·도별 추진
敎育중점	敎育자치제 실용주의	기회평등 사회적응력	사회와 직업 적응	창조적, 국제적	전인적인 敎育과 사회적응
청 소 년 활 동	문화, 사회, 경제적 구분 서비스 개발	敎育적인 프로 그램제공, 도전의식 고취	여과와 문화 소그룹 활동	사회의 연대의 식, 자주성	정서적 안정 학문의 중점, 점차개방
敎育제도	주단위별 상이	복선적	단선적이나 대학부터 복선	단선적 실업 기회 확충	단선적 고등학교부터 복선
자원봉사	집단, 클럽, 분단별	참여기회 제공	필요한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 활성화	시·도별 자원단과 협력

46) 이상원, 전게서, p. 40.

第2節 青少年犯罪에 대한 社會的 對策

1. 家庭環境

1) 家庭機能의 強化

가정은 인간이 성장과정에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사회환경이며 이 첫 번째의 사회환경에서의 경험 내용은 그 사람의 인격형을 결성하고 그 후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⁴⁷⁾ 청소년범죄의 경우 가정의 機能喪失이 나타나는 곳에서 많은 범죄자가 발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정에서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정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사회이며 制度機關으로서의 인격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은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발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무대이며 생활의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의 자녀의 올바른 의식형성을 위하여 부모가 취할 교육적 행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⁴⁸⁾

(1) 訓育的인 면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요즘 문제시되는 가정으로 訓育缺陷 家庭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이 사회화 과정을 밟음에 있어 부모의 훈육 및 감독은 청소년에게 옳고 그름의 구별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고 행동의 규범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가정에서의 적절한 훈육은 ‘支配-服從과 受容-拒斥’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관적·독선적·훈육방법을 지양하고 객관적·민주적 훈육방법에 의한 청소년 훈육은 非行豫防의 최선의 개선책이 된다고 하겠다.⁴⁹⁾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은 청소년에 대한 감독관으로서의 태도를 버리고 격

47) 엄동훈,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범죄」, 한국청소년연구원, 1996, pp. 48-69.

48) 황원영, “교육학이론에서 실증주의정신의 적용가능성의 범위와 한계”, 「논문집」 제24집, 1990, pp. 251-274.

49) 김영란, “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려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가치판단력을 길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청소년의 건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家庭環境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⁵⁰⁾

가정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으로서는 첫째, 부모들은 무조건적인 간섭이나 지시를 지양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독립심을 키워 주어야 한다. 둘째, 지나친 보호나 방임보다 다정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협력자 및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교유관계를 설정·지도하며 올바른 이성교제를 지도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 넷째, 일방적 강요보다는 훈육으로 금기보다는 권장으로 지도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년기부터 명심보감 등 동양적윤리 및 건전한 도덕심 함양과 실천적 지도를 지킨다. 여섯째, 부모들 자신이 스스로 준법적 태도·건전한 윤리·도덕을 실천하여야 한다. 일곱째, 부모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통하여 항상 존경받는 행동을 보이며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상의 방법들은 무리없이 유효 적절하게 실천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가정상과 靑少年像이 확립될 것이며 청소년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진실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情緒 및 愛情的인 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과 애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이 가정에서 情緒가 불안하고 愛情이 缺乏될 때 크나 큰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것은 명백한 일이다.⁵¹⁾ 우선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家庭環境의 대책을 논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간의 價値觀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pp. 51-61.

50) 유병준,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p. 63.

51) 박재호, “청소년범죄의 생태적인 원인과 대책”,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pp. 55-63.

둘째, 가족원, 특히 부모가 서로 교양·지능·인간관·성격·소망 등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가정의 주도권 또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葛藤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정당한 가족구성이 파괴되어 혈연관계가 없는 자가 개입했을 때 이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養親의 일방이 혼외의 성관계를 갖는 경우 청소년의 올바른 이성관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止揚해야 한다.

여섯째, 가족중에 정신적·신체적 결함자가 있을 때 청소년의 올바른 인생관 정립에 장애가되므로 이들을 적절히 治療·矯正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과밀주거를 해소해야 되며 가족원간의 종교상 차이의 해소,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이다.

이상과 같이 가족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 불안정의 개선을 열거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와 청소년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겠다.



2) 家庭役割의 增大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 離婚率의 增加·靑少年 家出의 增加·近親相姦의 頻繁한 發生·自殺·藥物中毒 등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가정문제는 가족윤리관 부재에 따라 가정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현대가정에 만연되어 있는 제반 家庭問題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건전 가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정규범하에 가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⁵²⁾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심으로 부부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협의하여 민주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자녀의 社會化를 위해서 가족의 교육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식위주위 교육에서 벗어나 가치교육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책임이 강한 자율적 인간으로 그리고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자세를 가진 인간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과잉보호를

52) 윤인석, “현대사회와 행정학”,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보 제17집, 1982, pp. 25-31.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 부부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⁵³⁾

부모는 화목한 가정을 실현하여 생활속에서 靑少年에게 모델이 되고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가치를 전수하여 삶의 사회적 뿌리를 내리게 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일관성있는 관심과 보호를 하며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마음의 대화통로를 가지며,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수용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는 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⁵⁴⁾

2. 教育環境

1) 有害環境 淨化

각급 학교주변에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有害한 業所의 汎濫으로 청소년교육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학교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비교육적인 有害環境을 정화하여 학습분위기 조성 및 학생의 건전화 心身發達을 도모하여야 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선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주변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화하는 한편, 등·하교길에서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는 불량 暴力輩 및 風紀事犯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동시에 有害業所에 대한 자율 정화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團束機關이 업자와 유착관계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할 때는 합동단속반(언론·경찰·행정기관·의원·학교 등)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53) 조성범, “청소년범죄의 발생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p. 55-57.

54) 이영세·김양희, “가정학이 추구하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와 개념에 관한 연구 : 비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학회지」 제34호, 1997, pp. 185-200.

2) 學校 不適應者에 대한 對策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으로는 낙오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정규교육제도에서 일탈된 中退者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대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중퇴자의 가장 큰 원인에 해당하는 “불량한 친구의 꺾임”이라는 점을 가정에서는 미리 알고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야겠다.

② 문제청소년은 문제가정에서 생긴다는 말처럼 부모 자신이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③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 학교를 중퇴한 다섯 가지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므로 貧民家庭 특히 결손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집에 대한 가정복지사업을 강화 해야겠다.

④ 학생징벌규정과 그 적용절차를 개선하여 학교밖으로 쫓는 退學處分은 신중하고 가능한 억제해야 한다.

⑤ 문제학생 지도와 상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⑥ 중·고등학교 교사를 정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⑦ 전인교육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고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장려해야 한다.

⑧ 중퇴생 지도에서 학교가 더 큰 책임을 져야겠다. 산업화된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간생산이라고 볼 때 중퇴생은 학교가 만들어 낸 실패작품이 된다.

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職業意識을 심어 주어야겠다.

⑩ 청소년의 就業能力을 키워주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3. 地域社會

1) 有害業所 抑制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有害業所로는 만화가게·전자오락실·디스코장·롤러스케이트장·카페·당구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의 이용 자체가 청소

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소를 통해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행동을 배우게 되거나 비행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장소로 주목받기 때문에 이들 장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해 나열한 것 중 비교적 유해도가 높은 전자오락실과 디스코장을 중심으로 실태를 보며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⁵⁵⁾

(1) PC방 등 각종 전자오락실

청소년들을 위한 오락시설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중의 하나로 전자오락실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자오락실이 건전한 놀이시설로 인식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범죄동기를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오락의 내용이 때리고 폭발하고 부수고 하는 것으로 정서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며 어둡고 지저분하며 시끄러운 가운데 吸煙·賭博 등 각종 非行이나, 비용마련을 위해 暴行·竊盜 등 범죄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나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자오락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도 전자오락을 즐기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단순히 전자오락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콜라텍 등 각종 디스코장

디스코장은 현란한 조명과 강한 비트의 음악이 있는 가운데 선정적이고 육체적인 움직임의 반복하므로 성 충동을 자극하여 각종 성비행과 유흥비 조달을 위한

55) 도종수의, “청소년유해 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pp. 85-96.

56) 강맹진,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사회·문화적 환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pp. 43-44.

각종범죄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 기존 연구나 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반면 영업주들은 조직화되고 지능적인 정보교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업자들의 자체정화와 사회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⁷⁾

2) 都市化로 인한 犯罪可能性 最小化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의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인구의 적정 배분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에서 노동력의 잉여, 도시산업의 포화상태, 시장 및 판로의 한계 등에 의해 도시의 실업율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⁵⁸⁾ 이들 실업자들은 기존 도시민들과는 상호간에 지역사회 공동생활에서 융화하기 어렵기 되며 문화적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불량 집단지역은 저소득자·무직자·많은 학교 중퇴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나름대로의 그 사회의 支配規範·道德과는 별개의 非行文化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불량지역은 비행전통이 정상적이며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통용되고 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그것을 무의식이며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학습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의 學習은 非行下位文化와 접촉하므로써 개인은 비행의 동기와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비행행위를 합리화 해주는 문화적 재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서도 비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집단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각종 다양한 모순이 존재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기의 행동을 정착시킬 표준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런 경우 급기야는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都市化에 따른 청소년 지도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도시화 현상의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⁵⁹⁾

57) 이시재, 「한국사회학 : 한국사회의 발전·변동론 연구」, 1985, pp. 49-72.

58) 한규학,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제도적 대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pp. 77-81.

3) 大衆媒體에 대한 政化裝置마련

언론매체의 선택과 수용시간,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부모나 성인들의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겠고,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가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매체를 접하고 난 뒤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상호의견 교환을 하거나 집단토론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하며 이를 부모나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문제작시 선정적 저널리즘에 입각, 범죄수법이나 범죄를 영웅시하는 내용 등 불가피한 기사를 신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선정적인 잡지 등을 靑少年들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⁶⁰⁾ 犯罪나 暴力 그리고 저속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TV·라디오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방영시간의 개선을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韓國新聞倫理委員會·韓國圖書雜誌週刊新聞倫理委員會·公演倫理委員會 등을 적극 활용한 자율적인 規制活動도 능동적으로 전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保護·善導 프로그램의 強化

(1) 靑少年指導委員의 活性化

현재의 각 경찰서는 경제력 있는 지역의 유지를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위촉방식을 개선하여 경제적 능력 있는 인사보다는 상담능력이 있는 인사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개선하여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¹⁾ 이를 위한 입법양식은 경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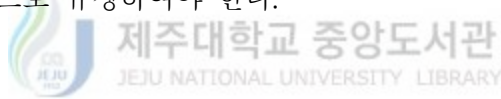
59) 권태환, “한국사회학 : 한국사회학에 있어서의 도시연구”, 1984, pp. 3-26.

60) 최창섭, “신문방송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pp. 36-47.

한 즉결 심판대상자에게 卽決審判節次法을 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과 훈방대상 소년과 보호자의 의뢰가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少年警察職務規則을 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 靑少年 通行禁止制度 導入 施行

靑少年 通行禁止制度는 현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청소년비행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적극 도입하여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법형식은 미성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통행금지 제도를 규정할 경우 실시주체, 실시지역, 통금대상 및 제외대상, 통금시간, 違反者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少年警察 奉仕隊의 創設

경찰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스스로 비행을 자제토록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년 경찰봉사대의 창설을 검토하여야 한다.⁶²⁾ 소년경찰봉사대의 구성은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사회봉사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이들의 관리주체는 각 경찰서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이 소년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택할 경우 봉사활동 점수 등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이나 경찰활동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근절이 파수꾼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년경찰봉사대로 활동한 봉

61) 김철주, 전계논문, p. 125.

62) 김철주, 전계논문, p. 126.

사대원이 장차 경찰로 진출하기를 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하는 방침 “청소년봉사대 우선채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4) 『防犯巡察隊』創設·運營

현재 각 경찰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靑少年指導委員會의 직업별 구성실태를 보면 69.7%가 지역사회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의 가시적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도 장기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국인 및 관광객 등이 증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는 현재보다는 증가가 예상되어 진다. 이에따라 『防犯巡察隊』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법순찰대의 구성은 기존에 구성되어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해병전우회 회원 중에서 관할 파출소장의 추천을 받아 각 경찰서장의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이들이 야간 방법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방법순찰대 창설·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 훈련방법, 재원확보 등은 향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5) 自治制度에 대비한 警察의 自律性 保障

自治制 警察制度를 장차 도입할 경우 청소년사범에 대한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일반범죄에서의 단순사범이나 교통사고범과 같은 過失犯 처리절차처럼 경찰의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도 自律權을 부여하여 처벌여부의 판단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4. 政 府

1) 就業期會 斡旋

미취업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거나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은 실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미취학 청소년들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이 어느 청소년 집단보다 비행유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들은 직장에서 업무에 종사할만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채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부정적인 자아의식과 사회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낮고, 부모의 사회경험적 지위도 낮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⁶³⁾ 不良集團과 어울리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무직으로 인한 최근 5년간 소년원 再犯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⁴⁾

<표 19> 최근 5년간 소년원 재범현황

연 도	신수용인원	재입원 인원	재입원율
1995	2,718	578	20.1%
1996	3,660	626	21.3%
1997	4,185	736	17.1%
1998	3,520	794	17.6%
1999	3,108	718	22.6%
계	17,191	3,452	20.1%

주 : 2000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요구자료 「소년원 재범현황('95~'99)」

따라서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정부 해당부처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개략적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3) 서정화외,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대책의 방향탐색」,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1986, pp. 24-27.

64) 2000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요구자료, 「소년원 재범현황('95-'99)」

(1) 職業訓練

직업훈련은 기능이 없는 청소년에게 자기 개발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기술교육 시설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⁶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학교 과정을 축소하고 5개의 정보통신학교, 6개의 정보산업학교, 1개의 일반 중·고등학교로 개편하였다. 또한 컴퓨터 애니메이션·멀티미디어정보통신 등 시대변화에 적합한 特性化·專門化 教育이 늘어나고 있는 등 교육과정 및 운영 체제를 개편하였다.

'99년 9월부터 전국 12개 少年院에 멀티미디어 어학실(338석)과 컴퓨터실(1,203석)을 설치하고, 교육용 근거리통신망(LAN)을 이용한 24시간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신기술·신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2) 就業斡旋



취업알선은 일선 행정기관장 책임하에 기능보유자, 당장 취업이 시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있으며 또 주기적인 취업정보 제공과 함께 사전 취업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지방고용안정센터(122개), 한국소년보호협회, 중소기업인협회,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53개)에서 취업희망 소년 전원에 대하여 취업 알선을 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직업전문학교 등과 협력하여 퇴원 소년원생에게 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⁶⁶⁾

(3) 就業情報 提供

정보부재 때문에 취업을 못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

65) 2000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소년범죄자의 재사회와 대책」

66) 2000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요구자료, 「소년범죄자에 대한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강화」

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⁶⁷⁾ 현재로서는 노동부 산하와 시·도 그리고 사설취업 안내소가 직업훈련을 비롯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교와는 연계가 미미하며 실질적인 면에서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하여 현재의 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전담반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신뢰감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進學期會 斡旋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 청소년들과 같이 비진학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채 부정적인 自我意識과 사회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낮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낮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량집단과 어울리다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⁶⁸⁾ 상급학교의 進學의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좌절감·열등감·부모의 기대를 성취하지 못한 죄책감·교우·사회로부터의 소외감·고립화에서 오는 불안감·유혹과 갈등, 사회의 냉대에 대한 반항 혹은 반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당국은 대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7) 박정호, “청소년범죄의 가정환경요인과 가정환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pp. 65-66.

68) 박재호, “청소년범죄의 생태적인 원인과 대책”,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pp.6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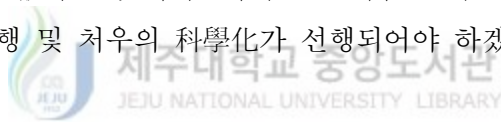
第3節 青少年犯罪에 대한 刑事政策的 對策

1. 再犯防止 및 矯正處遇

1) 社會내 處遇의 어려움

(1) 烙印效果

사회내 처우는 구금이 가져오는 각인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고 있지만 각인 이론가들중 일부는 사회내 處遇에 있어서도 범죄인에 대한 각인효과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⁶⁹⁾ 즉 사회내 처우가 시설내 처우에 시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犯罪者’ 로 규정되어 처우를 받는 것이므로 각인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공정한 집행 및 처우의 科學化가 선행되어야 하겠다.⁷⁰⁾



(2) 矯正官僚體系의 極大化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을 비롯하여 사회내 처우는 정부의 矯正關係 관료체계의 강화를 초래한다. 형의 선고유예이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처우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의 강화의 방향으로 기울게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社會內 處遇 프로그램은 중국에는 處遇對象者集團 및 사회의 범죄자에 대한 하나의 통제전략으로 전략해 버릴 위험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69) 오영근,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pp. 76-85.

70) Hawkins, G. : The Prison-Policy and Practics, 1986, 86면이하

2) 制度上 改善方案

(1) 虞犯少年의 少年審判대상에의 除外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⁷¹⁾ 虞犯少年은 현실적인 범죄나 비행이 아닌 단순한 비행의 위험성에 불과한데 비행 위험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재판의 결과 비록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인신구속이나 신체자유의 제한이 따르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⁷²⁾ 실제로도 우범소년이 少年審判에 회부된 사례가 극소수임에 비추어 실효성도 없으므로 우범소년은 이를 소년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적으로 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法官善意主義의 選擇

檢事善意主義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비행소년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소년보호주의에 배치될 뿐 아니라 절차의 중복과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법관선의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⁷³⁾ 법관선의주의를 택할 때 少年部判事의 증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건 부담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檢事와 法官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71) 안현식,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정연구」 제9호, 한국교정학회, 1999, pp. 167-197.

72) 전진구,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pp. 66-68.

73) 김윤길,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pp. 88-89.

(3) 다이버전(Diversion)의 擴大

虞犯少年은 물론 촉범소년에 대하여도 비행사실이 경미하고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警察段階에서 부모와 교사 및 지역 사회 선도위원의 협의아래 비공식적 제재를 과하고 사건을 종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⁴⁾ 이를 위하여 우범소년과 촉범소년을 家庭法院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警察署長의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非行少年에 대한 短期自由刑의 制限

短期自由刑의 무용성 내지 폐해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를 폐지 또는 제한하려는 노력은 실천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 형법개정을 통하여 단기자유형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회방위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少年法의 개정을 통하여 현행 소년법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死刑·無期刑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단기자유형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함께 그 경우에도 예측요건이 양호한 보호관찰부 執行猶豫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근에 입법한 바 있다.

3) 運營上 改善方案

(1) 檢察段階에서의 改善方案

현행제도하에서는 검사는 비행소년의 처우관념에 충실하여 소년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비율보다 보호사건화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⁷⁵⁾ 현행의

74) 이성구,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pp. 77-80.

75) 한정갑, “한국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

先導猶豫制度는 執行猶豫者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가 없던 시기에 검사 선의주의로 인한 소년형사사건의 과다현상을 해소하고 검사가 의사보호관찰로써 사실상 보호사 건화를 시도했던 인상이 짙은데 다이버전 운동으로서의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사실상의 자유제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소년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適法節次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나친 점도 없지 않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소년부 송치율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 필요성 여부는 법원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기소할 사건은 기소하고 기소유예자중 선도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更生保護機關에 의뢰하여 임의적인 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사료된다.⁷⁶⁾

(2) 裁判段階에서의 改善方案

保護觀察이 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보호관찰이라는 안전책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유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주저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제 보호관찰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므로 執行(宣告)猶豫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처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도 이제는 保護觀察所의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제도화되었으므로 소년부에서도 소년원 송치처분 보다는 보호관찰 처분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처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⁷⁷⁾ 재범위험성의 판정자료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판수단과 양형의 결정을 위하여 판결전 조사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少年保護事件이나 보호관찰에 부활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년형사사건 일반에 그 적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 제도는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판결전 조사의 의뢰시기와 방법 조사의 항목과 방법 보고서의 내용과 처우의견의 기재여부 등에 관한 자세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판결시점에서의 再犯豫測度가 작성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대학원, 1995, pp. 90-92.

76) 김기상, “소년수형자의 교정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pp. 123-131.

77) 서정욱, “소년원 수용기간의 재검토 - 단기처우를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법무부, 1986, pp. 156-161.

(3) 矯正·保護段階에서의 改善方案

非行少年에 대한 교정처우는 재통합모델에 입각하여 개별화되고 과학적이고 사회화된 다원처우를 행하여야 한다.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험되어야 하며 이들 프로그램에의 참가는 비행소년의 자발적 의사와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 특히 少年院은 장·단기원생에게 적합하도록 특성화되어야 하며 教育施設化 되어야 한다.⁷⁸⁾ 다른 한편 시설내 처우의 폐해를 고려하여 가석방과 가퇴원을 조기에 가석방율과 가퇴원을 제고하여야 한다. 執行猶豫者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가퇴원을 심사·결정함에 있어 가석방·가퇴원 예측표를 활용하는 등 재범위험성의 판정에 科學化를 기해야 한다. 보호관찰이나 갱생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지도감독과 보호 또는 물질적 방법과 정신적 방법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법적 요구와 함께 사회적 case work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⁷⁹⁾

施設內處遇의 社會化와 社會內處遇의 확대로 말미암아 민간참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선발을 합리화하고 협의기관의 조직운영을 조장하여야 한다. 사법기관과 교정보호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처우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收容施設의 改善方案

(1) 收容環境의 改善

少年期の 신체적 정신적 특성자체가 범죄와의 친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소년범죄의 특징은 질에 있어서 보다는 犯罪行爲者인 少年의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 미성숙과 그에 따른 인격의 가변성과 矯正可變性에 있으므로 소년범죄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가 중요성을 가짐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少年受刑

78) 이재선, “소년원에 대한 시설처우의 현황과 개선방향”, 「청소년범죄연구」 제1집, 법무부, 1983, pp. 55-57.

79) 이상원,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p. 96.

者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은 성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⁸⁰⁾ 소년수형자 수용시설은 정서적 환경의 조성을 통한 정서순화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2) 收容區分의 改善

천안 및 김천 少年矯導所의 수용구분은 학력, 형기 및 전과여부를 토대로 나누어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안소년교도소의 경우 20세 미만 남자 受刑者중 중졸이상 초범자로서 형기가 5년 이하인 자를 수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천소년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 수형자중 국졸이하자 累犯者 및 형기가 5년을 초과하는 소녀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⁸¹⁾ 김천 少年矯導所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형기가 5년 이상인 자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 형기가 5년 이상이면 국졸 이상인 자도 수용하고 있다. 成人矯導所와 마찬가지로 소년교도소에서도 미결수용자 등 소년수형자 이외의 수용업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소년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화 업무가 다소나마 소홀히 다루어 질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소년교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년인만 수용하여 이들에게 특유한 교화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수용제도상의 개선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⁸²⁾

(3) 少年矯正施設의 增設

少年矯導所는 무엇보다 그 기능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소년교도소의 학 교화 내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개의 소년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기관당 평균 1,100명

8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1996, pp. 176-184.

81) 송규섭,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 사회환경적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pp. 89-90.

8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치지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미결수용기능을 소년교정 기능과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과다한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총 8개의 소년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설당 평균 400여명의 소년수형자를 矯正教化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소년교도소를 증설하여 보다 세분화된 분류에 의거 소년 수형자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해 소년의 연령층과 어울리는 처우의 개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단위사동관리제도의 導入檢討

단위사동관리제도(Unit Management System)라 함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용체도로써 교화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수용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재소관리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구금의 폐해를 最小化하면서 안전하고 인도적인 환경을 만들고 피구금자로 하여금 사회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직업훈련을 교정시설내에서 행한다는 미연방교정국의 受刑者 처우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⁸³⁾

2. 少年院 處遇프로그램에 대한 改善方案

1) 職業訓練의 強化

少年院의 職業訓練은 원생들의 기능향상과 퇴원 후의 취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취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조건이 좋은 직업을 구하고 이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소년원의 직업훈련은 퇴원생이 사회 속에서 자립할 때까지 계속 원조를 제공하는 일에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원의 직업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취업을 통합시킨 프로그램들

83) 김상희,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 119.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⁸⁴⁾

첫째, 범죄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유용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한다. 여기서 “現實的”이란 의미는 ① 범죄자가 복귀할 지역사회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확보된 직업, ② 범죄자가 일하고 싶어하고 일할 수 있는(흥미와 능력에 부합 하는)직업, ③ 개인이 가진 자원들과 불리한 경력들을 가지고서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조건들에는 재정, 범죄경력, 교육수준, 신용 등이 포함된다)을 의미한다.

둘째, 敎育과 職業訓練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결함이나 문제들을 치유하거나 개선한다. 處遇, 矯正 혹은 기타 서비스들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직업적 목표물의 달성에 방해가 되는 개인적 결함이나 문제들(예를 들면, 약물남용)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알콜중독이나 약물남용, 충동을 억제하거나 동료집단의 유혹에 저항하는 일에서의 어려움, 자신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 책임 있는 행위를 연출하지 못하는 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난점들은 사회복귀 후에 성공적인 고용을 위한 개인의 전망을 감소시킬 것이다.⁸⁵⁾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계획에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충동을 억제하고 문제행동을 피하며,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들의 습득을 위해 목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된다.⁸⁶⁾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력과 직업계획에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평가자들과 개발전문가들이 담당하게 될 중요한 과제이다.

네 번째 目標은 프로그램참가자들이 사회복귀 때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⁸⁷⁾ 즉 職業訓練을 받은 원생들의 취업은 지역 사

84) 정찬모, “수용생활중인 재소자들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pp. 87-91.

85) 신용규, “청소년범죄 기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pp. 88-93.

86) 이종덕, “대중매체가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pp. 92-94.

87) 김종원,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곧 원생들의 취업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직업훈련 프로그램 속에는 지역사회내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就業開發(jobdevelopment)’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은 곧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현실의 소년원 직업훈련은 지나치게 ‘구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직업적 기술의 배양 못지 않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관리기술도 직업훈련의 맥락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 위케샤 카운티(Waukesha County)에서 실시하고 있는 ‘生活管理技術(Life Management Skills)’ 프로그램은 비록 사회내 처우에 바탕한 것이지만 많은 시사점을 提供해 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생활기술 실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이 자심감과 책임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學校 재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矯正機關에서의 變化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요소들은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矯正施設부터 일반학교로 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들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주의할 것은 矯正施設에서의 등급들은 시설내에 마련된 기준에 대한 적절한 성취수준들을 반영할 뿐이지 일반적인 교육수준의 등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안된다는 점이다.⁸⁸⁾ 물론 시설내의 교육계획은 일반학교의 교육계획과 양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정시설에의 수용은 가급적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사회내 처우를 강화하여 경미한 범죄를 행하거나 초범인 소년들의 경우 학교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⁸⁹⁾ 矯正施設에서는 학과교육 뿐만 아니라

1991, p. 99.

8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1999.

89) 최종원,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연구”, 「청소년범죄 연구」 제6집, 1988,

職業教育과 職業訓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현실에 적용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하도록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시설부터 퇴원하거나 기퇴원한 청소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후지도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地域社會의 變化

가족과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학교 재통합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⁹⁰⁾

첫째, 市民團體, 宗教團體 등을 통해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지역의 원조방안을 개발한다.

둘째, 사회로 재통합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독지가나 자선단체의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서비스들을 재조명한다. 예를 들어 비행소년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모든 서비스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범죄소년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地域社會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다섯째, 집이 없어 돌아갈 곳이 막막한 청소년들을 위해 “대체 주거시설”을 개발한다.

(3) 一般學校의 變化

犯罪少年들의 상당수가 이미 학업상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지 때문에 부가적인 교육서비스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pp.72-73.

90) 법무부, 「청소년범죄 연구」 제11집, 1993, pp. 45-55.

첫째, 제도화되어 버린 범죄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家族原理에 기초한 학교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矯正施設에 구금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개별화한다.⁹¹⁾

셋째, 施設內에 구금되었던 靑少年들을 전달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넷째,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직업훈련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한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학업상의 자질 등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職業·教育프로그램을 개발한다.⁹²⁾

다섯째, 경제적인 문제나 교육상의 資質問題 등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공립학교” 를 개발한다. 여기에는 교정시설과 일반학교 사이의 중간단계의 전이적 성격을 띠는 학교의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 재통합에는 개별학생들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학교는 개입활동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는 청소년들이 다른 분야들에서의 누적적 효과들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社會再痛合은 청소년들을 체계적인 학교의 환경 속에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3) 少年院-地域社會 統合的 處遇모델의 開發

앞서 거론한 바 있지만, 소년원에서는 學科教育이나 職業訓練 및 생활지도의 효과가 퇴원 후에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지속될 것으로 전제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 원의 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사회복귀 후 적응에 필요한 취업이나 復學, 轉學,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처우의 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회복귀교육은 경우 10일

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1996, pp. 32-35.

92) 오영근, “부정기형의 이론과 실제”, 제8회형사정책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p. 172-174.

남짓한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정신교육이 주가 되고 있다.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 사회와 접촉빈도가 늘어나감으로써 원만한 사회적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矯正教育이 효율적인가의 판단은 원생들의 출원 후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가, 즉 비행이나 범죄를 다시 행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 교육적 효과는 원생의 출원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문제이며, 출원자 모두의 교육적 효과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생에 대한 矯正教育은 그들의 출원과 함께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퇴원생보다 가퇴원생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현실은 또 다른 處遇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⁹³⁾ 可退院은 시험적 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유박탈기간을 최대한으로 短縮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가퇴원기간은 소년이 司法節次를 거치고 않고 다시 수용될 수 있는 불안정한 기간이기도 하다.

현행 少年院生 수용지침에 의하면, “원장은 가퇴원자의 진로지도와 재비행 방지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通信, 訪問, 出席,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사후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소년원생수용지침 제 45호) 이 조항은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연계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소년원의 교정교육이 원생의 출원과 함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 처우와의 연계 속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少年院은 예산과 人力의 부족으로 출원한 원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않은 원생을 무작정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비행을 誘發하도록 방치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사후지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투자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⁹⁴⁾

우리나라 少年矯正分野에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단계의 처우프로그램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즉 사회내 처우 아니면 施設處遇로 이분되어 있다. 그렇지만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던 소년들을 바로 사회로 복귀

93) 김준호외,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94) 이영국, “청소년범죄의 최근동향과 그 대책”,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p. 55-57.

시키는 것보다 사회 속에 거주형 시설에서 사회적응의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서서히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간처우소(Halfway Houses)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유익할 듯 하다. 중간처우소는 시설내 수용이 면제된 犯罪少年이나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犯罪少年 모두에게 적용가능하다.⁹⁵⁾ 즉 少年院의 사회복귀 교육단계에 있는 원생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사회적응 훈련을 시설밖에 있는 중간처우소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중간 처우소들은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그 시설들은 국가의 교정시설에 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둘째,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들에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教育課程(치료, 직업훈련, 학과교육)과 소집단 카운셀링 등도 제공할 수 있다.

중간처우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중간처우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반대속에서 시작된다면, 지역사회는 무관심을 받기가 십상이고, 최악의 경우는 지역 사회로부터 적의감마저 받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협조는 그 시설을 지역에 설립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과 통합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간처우소는 청소년 犯罪問題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매개체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⁹⁶⁾

3. 野外 克己訓練의 活用

非行少年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용인된 책임과 의무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기 쉽다. 그들은 인습이전의 단계에서 살며 사회적 규율보다는 자신의 충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

95) 중간처우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Edward Latessa and Harry E. Allen, 「Half-way Houses and Parole : A National Assess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0, 1982, pp.123-163.

96) 박영진, “청소년범죄의 추세분석 및 대책”, 「논문집」, 경찰대학, 1996, pp. 575-597.

움에의 동기가 약하고 타인, 특히 권위적인 인물들에게 배우기 꺼려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사회의 요구와 화해하고 그 안에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상반된 욕망도 존재한다. 적당한 배움의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잠재력이 발휘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존심이 너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한 성취감을 맛본 경험이 부족하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는 실패와 좌절, 타인으로부터의 무시 등의 경험이 누적되어온 결과이다. 소년원의 교육은 이렇게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고 성취의 자신감을 복돋아줄 수 있어야 한다.⁹⁷⁾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사고와 언어행동에 기초한 것들이다. 이러한 심성훈련들은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으나 자신감과 성취감을 회복시키는데 약점이 있다.

학과교육이나 職業訓練의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공여부를 확인시켜줄 수는 있지만 결과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때문에 단기간의 집중적인 處遇로써 이상의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야외 극기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깊다. 소년원에서는 生活指導의 한 방편으로 야영훈련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중인 야영훈련은 야외학습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 그것은 모범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소풍” 과 같은 레크리에이션에 불과할 뿐 克己訓練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⁹⁸⁾

Colins는 범죄소년들의 사회재적응에 모험교육의 활용가능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험학교에는 犯罪少年이 자신의 파괴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해 줄 다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다고 한다.

첫째는 게임과도 같은 분위기이다. 자신을 한번에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원래의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좀 더 쉬울 것이다.

둘째, 冒險教育은 친밀한 또래집단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모험을 함께 겪게 될 그 작은 모임을 통해, 모든 이들은 책임을 분담하게 되므로 각자의 위치는 중요해지며 공통의 연대감을 형성한다.

97) 도중수외,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0, pp.32-35.

98) 이성식, 「청소년범죄에 있어 긴장과 통제 : 확대된 두 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1999, pp. 191-214.

셋째, 冒險教育은 폐쇄된 시설을 떠난 야외에서 진행된다. 야외는 참여자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야외라는 환경은 범죠평년들로 하여금 생존본능을 발휘하게 하며 그들의 감각은 고도로 긴장된다. 이렇게 고조된 감각적 수용자세로 말미암아 소년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넷째, 모험교육은 犯罪少年들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도록 한다. 각각의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모험교육의 교육방식은 매우 집중적이면서 광범위하다. 敎師는 대부분의 과정을 학생과 같이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한다. 그는 학생에게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실습을 격려하며, 그들의 힘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원조한다. 그의 임무와 능력에 기초한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학생들은 그를 ‘아버지’와 같은 어른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또래집단에 비해 이차적인 중요성을 지니지만 여타의 환경에서 마주치는 어른들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少年院과 大學의 連繫

민간 矯正施設이 부재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년교정에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의 방법을 통해서이다. 自願奉仕는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의 형태를 취하면서 專門人力이나 장비들 혹은 가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몇몇 지방대학에서도 그 지역의 소년원에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⁹⁹⁾ 그렇지만 대학자체가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의 개입은 아직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학과 교정기관의 연계가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요원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국가가 민간부문의 자원들을 정책적 목적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활용하는데서 기인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정의 문제가 더 이상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가는 矯正分野를 충분

99) 이병기·김성언,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pp. 62-68.

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한 것들이 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들은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少年院 處遇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호소년들에 대한 서로 대립적이기 조차 한 감시와 처우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두 요소를 한꺼번에 다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대안은 처우를 철저히 차별화 시키는 것이다. 교정가능성에 따라 범죄소년들을 철저히 분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설내 처우를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범죄소년들이 다 교정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화를 버려야 한다. 교정이 불가능한 犯罪少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정서비스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만족해야 한다. 처우의 차별화 정책은 곧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전제로 한다. 시설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연계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第4節 警察의 役割增大 方案



1. 關聯法規의 緩和

靑少年犯罪의 예방과 범죄소년의 처리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찰은 비행소년을 소년사범 절차에 개입시킬 것인가 또는 불개입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少年法 제4조 제2항에서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強制條項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⁰⁾ 이것은 모든 비행청소년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며 이것은 모든 비행청소년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기인한다. 이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라는 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처벌위주의 청소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 청소년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

100) 김철주,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pp. 121-122.

다. 따라서 소년법 제4조 2항을 任意條項으로 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근본 취지에 맞게 경찰단계에서 비행소년을 처벌위주의 사법 절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선도위주의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⁰¹⁾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 관한 경찰관련 법령, 즉 警察法, 警察官職務執行法, 少年法을 모두 청소년 선도규정을 확대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경찰활동이 선도위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2. 學校·警察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생들에게 동급생의 약물사용 압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약물남용 극복 (DARE), 경찰과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재를 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범죄실태 및 범죄피해 예방법을 교육하는 犯罪防禦教育(Crime Resistant Education), 총기안전과 폭력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상황 대피요령(STAR)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공동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警察의 構造改革

1) 組織의 適正化

현재 경찰조직내의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계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바, 청소년범죄의 심각성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조직으로서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少年問題를 전담하는 기구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계단위로 되어있는 소년계는 소년과로 확대 개편하고 경찰청의 소년계는 소년업무만을 전담하는 국단위의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101) 이상원, 전계논문, P. 67.

2) 人事行政의 內實化

청소년업무는 비행소년을 발견·조사하는 搜查業務와 상담선도하는 善導業務의 비율이 현재 3:1로 구성되어 있으나 처벌위주의 청소년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선도위주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의 비율을 1:1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업무 담당기간이 대부분 1-2년에 그침에 따라 전문성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승진, 전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第5章 結 論

본 연구는 靑少年犯罪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중에서 가정환경과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최근의 청소년범죄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정 환경의 불건전성과 사회환경의 병리현상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가정환경 육성과 물질문명으로 인한 정신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회 환경의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하에 먼저 가정환경이 靑少年犯罪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되는 家庭環境의 주요 요소로써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및 父母實存 여부와 이에 관련된 청소년의 성격형성, 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물질만능 사상이 팽배하게 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정립시키지 못한 채 사회의 병리현상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비행청소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앞에서 제기한 바와같이 청소년 범죄인은 그 心身의 未熟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성인보다 教化 改善이 용이하며, 또한 청소년은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이 뿌리박혀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잘 교화 선도하여 그들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격형성을 뒷받침해 주며, 자기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靑少年犯罪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그들로 하여금 범죄와 비행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계체제의 확립이 요청된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인데,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는 기계적, 타산적인 것이 아니고 깊은 정서적인 유대로 맺어진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바탕이 없는 곳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보호와 교육의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깊은 마음으로부터의 애정에 의해서 맺어지는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한 곳은 현대사회에서는 가정 이외에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社會化의 기능을 발휘해 준다면 오늘날의 청소년범죄 및 비행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종교행사나 특정인을 초빙한 강습회에 참여도록 하여 선악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한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심리학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다. 특히 종교행사를 통한 자기학습은 청소년의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란 내면적인 가치관 확립과 자유로운 참여속에서 자기통제력을 함양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과 화합하는 기회가 자기만족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입시위주의 敎育制度를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知·德·體가 고루 발달해야 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은 장래 출세를 위한 관문으로써 “知”에만 치중한 나머지 德·體가 결합된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육체는 건전하되 정신력이 낮고, 지식은 있으나 건강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육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으로 진학·취업에서 가치척도나 기준을 지식에만 두지않고 전인교육이 잘 이루어 졌는지를 척도로 삼았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양심적인 상인들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여 물질이 정신을 퇴색시키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 자식보다도 어린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 강매를 하고, 유해한 음식이든 비행에 빠지기 쉬운 물건이든 간에 생각없이 판매하는 파렴치한 상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탕주의나 불로소득의 팽배된 이유라 하겠다. 한편, 국가의 세금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 생각된다.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때 양심적인 상혼자들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상도덕을 바르게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구입 할 수 있는 담배자동판매기나 유해물 취급소에 罰金制度를 대폭 강화한다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감소시

키는 방법이 하나가 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대설치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유해업소나 위험한 곳에 가서는 안된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적당한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최소한 읍·면·동단위 행정구역마다 소공원이나 건전한 놀이시설 및 공공도서관을 신설한다면 비행이나 범죄에 빠질 기회가 적어질 것이다.

다섯째, 중퇴자를 위한 재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학교 밖으로 쫓는 퇴학처분은 간혹 필요하겠으나 중퇴자를 위한 재교육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퇴생을 만든다는 것은 외로움과 예외감으로 빠져들도록 하여 더욱 비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를 조장하게 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市郡單位 특수학교를 신설하여 특수교사로 하여금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들을 자동입학시켜 정규교육을 실시한다면 좀더 비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大衆媒體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마다 시청각실이나 연극실 및 오락실을 마련하여 적어도 한달에 2~3회 정도를 전교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 현재는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경찰이 역할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년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확대 개편과 청소년업무 담당자에 대한 승진, 전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훈방대상 소년과 보호자의 의뢰가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경찰직 무규칙을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풍속역할을 하는 「少年警察 奉仕隊의 創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이 서로 건전한 조화를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1. 單 行 本

- 김제광·공석영·김충기, 「청년발달심리학」, 세광공사, 1993.
- 배종대, 「형사정책」, 대왕사, 1988.
- 정인석, 「신청년심리학」, 박영사, 1998.
- 김창휴, 「정선교육학」, 대방출판사, 1983.
- 김형만·이동원 공역, 「범죄학 개론」, 청목출판사, 2001.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염동훈,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범죄」, 한국청소년연구원, 1996.
- 배종근·정태범, 「교육행정, 교육경영」, 정민사, 1986.
- 서명원, 「가정교육사회학」,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2.
-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87.
- 이운호, 「형사정책」, 박영사, 1996.
- 윤덕중, 「범죄와 소년비행학」, 박영사, 1988.
-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1992.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8.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이학춘, 「중핵교육학」, 박문각, 1984.
- 정범모, 「국가발전과 청소년」, 배영사, 1979.
-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7.
- 정하성, 「청소년 윤리」, 백산출판사, 1987.
-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1998.
- 하영철, 「핵심교육학」, 형설출판사, 1992.

2 論 文

- 이윤우, “한국청소년의 비행원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 정철희, “청소년과 비행”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재단, 1983.
- 안재정, “청소년비행의 원인분석에 대한 고찰”, 「논문집」,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1987.
- 최근혁, “한국의 청소년문화와 관계법령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 김형청, “소년범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안논총」, 경찰대학교 치안연구소, 1985.
- 김수정,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 김연상, “한국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 김현순,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원인과 소년원상담교육모델연구”, 「교육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1.
- 문영송, “가정환경과 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박성덕, “청소년범죄에 대한 주요국의 선도보호제도와 교정교육제도”, 「입법조사월보」 통권 205호, 국회도서관, 1991.
- 황원영, “교육학이론에서 실증주의정신의 적용가능성의 범위와 한계”, 「논문집」, 1990.
- 김영란, “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 유병준,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 송광성의, “정학·퇴학 청소년의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박재호, “청소년범죄의 생태적인 원인과 대책”,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송규섭,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 사회환경적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조성범, “청소년범죄의 발생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이영세·김양희, “가정학이 추구하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1990.
- 강맹진,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 한규학,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 권태환, “한국사회학 : 한국사회학에 있어서의 도시연구”, 1984.
- 최창섭, “신문방송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김철주,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 박정호, “청소년범죄의 가정환경적 요인과 가정환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오영근,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 안현식,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1999.
- 전진구,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김윤길,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이성구,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한정갑, “한국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 신우식, “청소년범죄의 가정환경적 실태분석과 대책 - 서울소년감별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이말숙, “청소년비행 유형과 부모의 자녀 교육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마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이상원,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이영선, “청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 이중백, “청소년범죄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전광희, “한국의 가족제도와 청소년범죄의 변동”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정하룡,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제성옥, “현대청소년범죄의 실태와 선도책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 황주란, “청소년범죄의 환경적 요인분석과 예방대책”,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신평우, “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원태삼,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이에대한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 이수성·한인섭, “세계 범죄학의 연구동향분석”, 「법학」 6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비행의 조기에측요인에 관한 연구”, 1996.
- 한인섭, “실증주의 범죄학의 성립과 발전”, 「고시연구」 264호, 1996.

이진우, “조직심리학의 발전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우암논총」, 청주대학교, 1992.

이영국, “청소년범죄의 최근동향과 그 대책”,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대한교육연합회, “청소년 행동방향에 관한 연구”, 1996.

김준호,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3. 刊 行 物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6-2002.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1996-2002.

법무부, 「법무연감」, 1999.



4. 外國文獻

- S. D. Portues, “Q-score : Temperament and Delinquency” , J. Soc Psychol, 1945.
- V. William, Pelfrey, Ph.D.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Unversity of Alabama in Birmingham』 , 1987.
- Günther Kaiser, Kriminologie. Eine Einführung in die Grunddlagen, 8., neubearbeitete und ergänzte Auflage, Heidelberg 1989
- A. Cloward. Richard., “Ilegitimate means, anomie, and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 1959.
- K. Cohen., Cohen, Delinquent Boys : The Culture of the Gang. New York : Free Press(1955).
- Harold Garfinkle, “Conditions of Successful Degradation Ceremon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56.
- E. H. Sutherland and D. R. cressey, Criminology, 10thed, New York : J. B. Lippincott Co., 1978.
- Sheldon and Eleanor T. Glueck. Unravelling Juvenile Delinquency, 3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 H. S.(Ed), Becker, Social Problem : A Modern Approach : New York : Wilwy, 1996.
- H. S. Becker., Outsider, N.Y., The Free, 1963.
- A. Cohen., Delinquent Boys : The Culture of the Gang, N.Y., The Free Press, 1955
- L. P. Miller In & E. W. Gordon (Eds),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ew York: AMS Press, 1974.
- D. Matza & G. M. Skkes, Technique of Neutralization, ARS, VOL.22.1957.
- Donald Clemmer, The Prison Community, N.Y Rinehart, 1958.
- E. Durkheim., Education and Siology. New York : The Free Press, 1992.

- T. Hirsch., Causes of Delinquency, Berkley, cal. University of the California Press, 1969.
- J. R. Williams and Gold, From Delinquent Behavior to official Delinquency, Social Problems Vol, 20 (Fall), 1972.
- R. K. Merton. & R. Naisbet., (Eds), Contemporasry Social Problems(3rd. ed.)New York : Hacourt Brace Jovanovich, 1966.
- R. K. Merton, Continuities in the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Frame, N.Y. 1968.
- Howard, Abadinsky and L. Winfree jr, Thomas Crime & justric 2nd ed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1992.
- A. Ashworth, et al., The Youth Court London L Wasterside Press, 1992.
- J. Bernard. Thomass., The Cycle of juvenile justic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E. Simonsen. Clifford., Juvenile justice in America 3rd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1.
- G. Hawkins. : The Prison-Policy and Practics, 1986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y and Countermeasure of Korean Juvenile Crimes

Kim chan 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ajor in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University

Juvenile crimes have become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ese days, and they show more serious aspect due to the rapid social change and the corruption of traditional sense of value. The reason why the troubles of adolescents are important is that the fact most of adult crimers have an experience of juvenil crimes has been clarified by some studie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of adult crime, therefore, is to prevent juvenil crimes and to treat effectively with them.

The reason why juveniles commit a crime is that they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due to the indifference of their family, deformed school-education, confused sense of value according with rapid social change, and the absense of governmental policy for them.

To solve the problem fundamentally, their family, school and society, being jointed together, should help them establish their sense of value and guide them not to commit crimes.

In this thesis, I analysed the reality and countermeasure of juvenile

crimes which becomes an objective to be concerned and to stud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upon the statistical material published by governments referring to the reality and the countermeasure of juvenile crimes. In addition, other references are some thesis and books from home and abroad dealing with the issues of juvenile. The statistical material is prepared on the basis of crime analysis and juvenile white paper recently published.

In chapter 2, the significance and reality of juvenile crimes are examined. Based upon the definition of juvenile and juvenile crimes, the reality of juvenile crimes is analyzed and presented according to its type and feature. In chapter 3,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juvenile crimes is divided into a psychological and a social factor. Then, the cause of juvenile crimes is classified as the environment of home, educational system, society, and correctional institution. After that, it is analysed with concentration. In chapter 4, after the cases of the U.S., England, and France in regard to juvenile crimes are examined, those cases are compared and analysed based on each feature. In regard to these policy cases of each country, the countermeasure which our country may take into practice as a precautionary measure is suggested laying stress on the measures in a society, a criminal policy, a role of policy. In chapter 5, as a conclusion, this study is summarized and the plan on an effective precautionary measure is emphasized in order to raise and care for the juvenile sound on the basis of one organization closely cooperated by home, school, and society.